

행정간행물등록번호

54-6280000-100025-10

2025년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인천광역시
www.incheon.go.kr



납세자 권리헌장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 법령, 자치 법규에 따라 존중되고 보장됩니다.

납세자는 신고·기록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지방세를 탈루했다는 명백한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하다고 추정됩니다.

납세자는 범칙사건 조사와 세무조사를 받을 때 세무 대리인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지방세 탈루 혐의 등이 없는 한 중복 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 정보를 비밀로 보호받고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으며,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법령과 자치 법규에 규정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고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없는 한 세무조사 기간과 사유를 미리 통지 받으며, 천재지변,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에 세무조사를 연기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 또는 중지되거나 세무조사가 끝났을 때 사유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에는 불복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또한 납세자보호관 등을 통해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025년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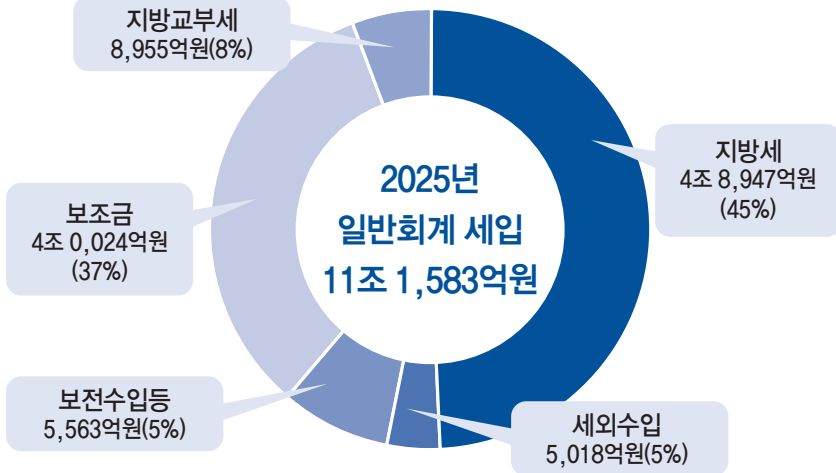
지방세 안내 및 상담

구 분	우편 번호	주 소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번호
인 천 시 세 정 담 당 관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https://www.incheon.go.kr)	440-2540
인 천 시 징 수 담 당 관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https://www.incheon.go.kr)	440-2630
강 화 군 (세무회계과)	23031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https://www.ganghwa.go.kr)	930-3041
옹 진 군 (재 무 과)	2219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120(옹현동) (https://www.ongjin.go.kr)	899-2410
중 구 (세무1, 2과)	22315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 27번길 80(관동1가) (https://www.icjg.go.kr)	760-7230(세무1과) 760-7700(세무2과)
동 구 (세 무 과)	22556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67(송림동) (https://www.icdonggu.go.kr)	770-6270
미 추 홀 구 (세무1, 2과)	2216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리로 95(송의동) (https://www.michuhol.go.kr)	880-4630(세무1과) 880-7463(세무2과)
연 수 구 (세 무 , 송도세무과)	21967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동춘동) (https://www.yeonsu.go.kr)	749-7461(세무과) 749-7478(송도세무과)
남 동 구 (세무1, 2과)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https://www.namdong.go.kr)	453-2360(세무1과) 453-2350(세무2과)
부 평 구 (세무1, 2과)	21354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8(부평동) (https://www.icbp.go.kr)	509-6230(세무1과) 509-8920(세무2과)
계 양 구 (세무1, 2과)	21067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계산동) (https://www.gyeyang.go.kr)	450-5221(세무1과) 450-5261(세무2과)
서 구 (세무1, 2과)	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https://www.seo.incheon.kr)	560-4190(세무1과) 560-4210(세무2과)

지방자치의 힘, 자주재원 확충

인천시 자주재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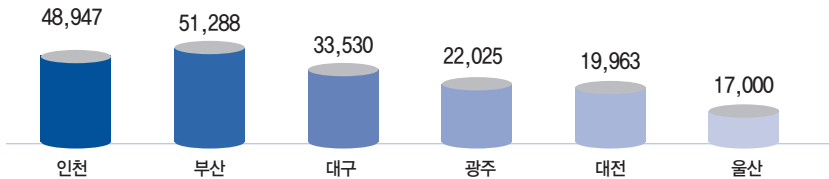
※ 2025년 본예산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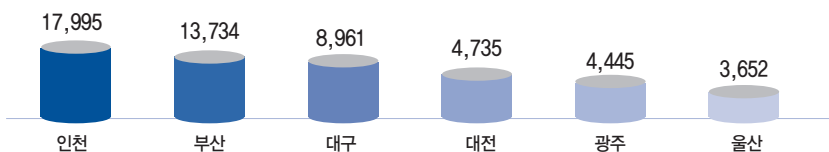
인천시 지방세수 위상(광역시 비교)

※ 2025년 본예산 기준

■ 지방세 : 2위



■ 취득세 : 1위



지방세 관련 주요현황

01 국세 대 지방세 비중

(단위: 억원)

구분	합계 (국세+지방세)		국세 (관세포함)		지방세 (전국)		인천시 (군구포함)	
	비중		비중		비중		비중	
2024년	4,506,178	100	3,365,324	74.7	1,140,854	25.3	58,915	5.2
2023년	4,565,320	100	3,440,711	75.4	1,124,609	24.6	59,055	5.3
2022년	5,145,100	100	3,959,393	77.0	1,185,707	23.0	61,439	5.2

02 인천광역시 지방세 현황

◆ 분류별 현황

(단위: 억원)

구분	합계		시세		구세		군세	
	비중		비중		비중		비중	
2024년	58,915	100	47,173	80.1	10,997	18.7	745	1.2
2023년	59,055	100	47,793	80.9	10,544	17.9	718	1.2
2022년	61,439	100	49,780	81.0	10,923	17.8	736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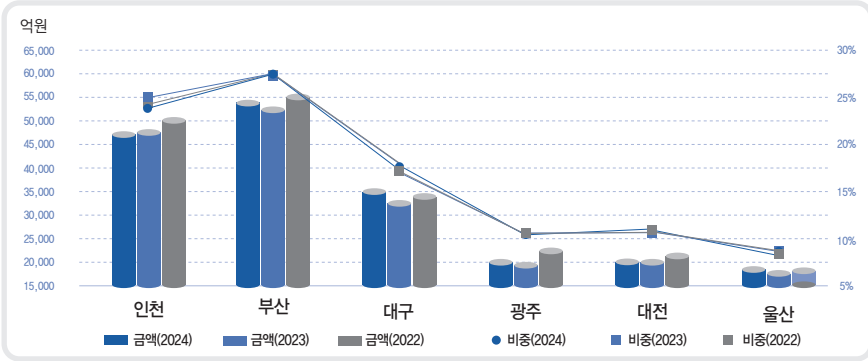
◆ 세목별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4년		2023년		2022년	
	비중		비중		비중	
합계	58,915	100.0	59,055	100.0	61,439	100.0
취득세	17,271	29.3	18,957	32.1	21,403	34.8
등록면허세	1,230	2.1	1,160	2.0	1,080	1.8
레저세	189	0.3	201	0.3	203	0.3
담배소비세	2,073	3.5	2,103	3.6	2,095	3.4
지방소비세	9,775	16.6	8,708	14.7	7,900	12.9
주민세	1,325	2.3	1,239	2.1	1,159	1.9
지방소득세	7,921	13.4	8,894	15.0	8,888	14.5
재산세	8,037	13.6	7,843	13.3	8,433	13.7
자동차세	4,999	8.5	4,762	8.1	4,702	7.6
지역자원시설세	1,267	2.2	1,118	1.9	1,147	1.9
지방교육세	4,091	6.9	4,128	7.0	4,399	7.2
과년도수입	737	1.3	△58	△0.1	30	0.0

03 광역시 지방세(시세) 세목별 비중

◆ 광역시 지방세(시세) 규모



◆ 2024년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비중	인천	비중	부산	비중	대구	비중	광주	비중	대전	비중	울산	비중
합계	194,066	100	47,173	100	53,268	100	34,727	100	20,579	100	20,323	100	17,996	100
취득세	56,341	29.0	17,271	36.6	14,941	28.0	10,646	30.7	4,557	22.1	4,633	22.8	4,293	23.9
등록면허세	335	0.2	39	0.1	75	0.1	88	0.3	-	-	-	-	133	0.7
레저세	1,332	0.7	189	0.4	846	1.6	101	0.3	161	0.8	20	0.1	15	0.1
담배소비세	7,682	4.0	1,999	4.2	1,874	3.5	1,305	3.8	955	4.6	931	4.6	618	3.4
지방소비세	53,455	27.5	9,047	19.2	14,971	28.1	10,897	31.4	6,749	32.8	6,640	32.7	5,151	28.6
주민세	416	0.2	97	0.2	111	0.2	74	0.2	50	0.2	52	0.3	32	0.2
지방소득세	34,041	17.5	7,742	16.4	9,599	18.0	4,647	13.4	3,824	18.6	3,991	19.6	4,238	23.5
자동차세	18,768	9.7	4,874	10.3	4,938	9.3	3,266	9.4	2,251	10.9	2,057	10.1	1,382	7.7
지역자원시설세	4,477	2.3	1,267	2.7	1,291	2.4	574	1.7	323	1.6	336	1.7	686	3.8
지방교육세	15,317	7.9	4,091	8.7	4,169	7.8	2,795	8.0	1,507	7.3	1,443	7.1	1,312	7.3
과년도수입	1,902	1.0	557	1.2	453	0.9	334	1.0	202	1.0	220	1.1	136	0.8

◆ 2023년

(단위 : 억원)

구 분	합계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합 계	190,887	100	47,793	100	52,356	100	32,781	100	20,289	100	20,121	100	17,547	100
취 득 세	55,583	29.1	18,966	39.7	14,352	27.4	9,593	29.3	4,239	20.9	4,549	22.6	3,894	22.2
등록면허세	308	0.2	38	0.1	63	0.1	106	0.3	-	-	-	-	101	0.6
레 저 세	1,293	0.7	201	0.4	823	1.6	93	0.3	160	0.8	9	0.0	7	0.0
담배소비세	7,912	4.1	2,027	4.2	1,961	3.7	1,351	4.1	991	4.9	951	4.7	631	3.6
지방소비세	49,991	26.2	8,029	16.8	14,408	27.5	10,020	30.6	6,397	31.5	6,309	31.4	4,828	27.5
주 민 세	412	0.2	94	0.2	110	0.2	74	0.2	50	0.2	52	0.3	32	0.2
지방소득세	37,897	19.9	8,733	18.3	10,363	19.8	5,152	15.7	4,403	21.7	4,476	22.2	4,770	27.2
자 동 차 세	18,293	9.6	4,641	9.7	4,798	9.2	3,230	9.9	2,246	11.1	2,014	10.1	1,364	7.8
지 역 자 원 시 설 세	4,350	2.3	1,118	2.3	1,319	2.5	571	1.7	331	1.6	345	1.7	666	3.8
지방교육세	15,138	7.9	4,128	8.6	4,120	7.9	2,683	8.2	1,489	7.3	1,429	7.1	1,289	7.3
과년도수입	△290	△0.2	△172	△0.4	39	0.1	△92	△0.3	△17	△0.1	△13	△0.1	△35	△0.2

◆ 2022년

(단위 : 억원)

구 분	합계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합 계	200,537	100	49,780	100	54,517	100	34,444	100	22,265	100	21,740	100	17,791	100
취 득 세	63,963	31.9	21,403	43.0	16,304	29.9	10,416	30.2	5,853	26.3	5,710	26.3	4,277	24.0
등록면허세	278	0.1	39	0.1	75	0.1	74	0.2	-	-	-	-	90	0.5
레 저 세	1,282	0.6	203	0.4	827	1.5	85	0.2	153	0.7	8	0.0	6	0.0
담배소비세	8,025	4.0	2,017	4.1	2,002	3.7	1,383	4.0	1,006	4.5	973	4.5	644	3.6
지방소비세	49,021	24.4	7,297	14.7	14,344	26.3	10,066	29.2	6,234	28.0	6,217	28.6	4,863	27.3
주 민 세	411	0.2	92	0.2	111	0.2	74	0.2	50	0.2	52	0.2	32	0.2
지방소득세	38,316	19.1	8,724	17.5	10,088	18.5	5,535	16.1	4,651	20.9	4,769	21.9	4,549	25.6
자 동 차 세	18,356	9.2	4,578	9.2	4,868	8.9	3,299	9.6	2,232	10.0	2,017	9.3	1,362	7.7
지 역 자 원 시 설 세	4,600	2.3	1,147	2.3	1,427	2.6	615	1.8	359	1.6	378	1.7	674	3.8
지방교육세	16,143	8.0	4,399	8.8	4,384	8.0	2,788	8.1	1,632	7.3	1,575	7.2	1,365	7.7
과년도수입	142	0.1	△119	△0.2	87	0.2	109	0.3	95	0.4	41	0.2	△71	△0.4

CONTENTS

I. 지방세 개관

1. 지방세 개념	15
2. 지방세 용어의 이해	16
3. 지방세 구조	19
4. 지방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21
5. 지방세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22
6. 지방세 세율	23
7. 지방세 월별 일람표	24

II. 지방세 세목별 개요

1. 취득세	27
2. 등록면허세	34
3. 레저세	35
4. 담배소비세	36
5. 지방소비세	37
6. 주민세	38
7. 지방소득세	39
8. 재산세	41
9. 자동차세	42
10. 지역자원시설세	44
11. 지방교육세	45

III.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

1. 지방세 납부방법	49
2. 지방세 납부매체	52
3. 지방세 납부세액 공제혜택	54
4. 디지털 지방세 홍보	55

IV. 지방세 구제제도 및 마을세무사 제도

1. 지방세 구제제도	59
2. 마을세무사 제도	63

V. 납세자보호관 제도 및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1. 납세자보호관 제도	69
2.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78

VI. 기타 유용한 지방세 정보

1.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제도	83
2.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제도	86
3. 분할납부 및 물납 제도	88
4. 지방세 체납시 제재 내용	90
5. 납세증명서의 제출	91

VII. 부록

1. 2025년 지방세 관계법 주요 개정내용	95
2. 국세 전화상담 및 세무서 안내	100

2025년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I 지방세 개관

1. 지방세 개념	15
2. 지방세 용어의 이해	16
3. 지방세 구조	19
4. 지방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21
5. 지방세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22
6. 지방세 세율	23
7. 지방세 월별 일람표	24

2025년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1. 지방세 개념

01 지방세 의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받아 그 살림살이를 합니다.
-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지방공공재와 행정서비스, 즉 자치단체의 살림살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령에 근거하여 지역 주민에게 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부과·징수하는 세금입니다.
- 실정법상에서 지방세란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시·군세, 구세(자치구의 구세)를 말합니다.

02 법적 근거

- 「헌법」 제38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지며, 「헌법」 제59조에서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의 세목과 지방자치단체별로 과세할 수 있는 세목을 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에서 각 세목별 세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지방세의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법률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인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지방세 관계법	지방세법	지방세 11개 세목에 대한 각 세목별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 규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 징수에 필요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조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세의 세목, 세율 등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도 지방세 부과·징수에 근거가 되는 지방세 관계법임

2. 지방세 용어의 이해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함)를 말합니다.

❖ 지방세

-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시·군세, 구세(자치구의 구세를 말함)를 말합니다.

❖ 납세의무자

-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 납세자

-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와 특별징수 의무자를 말합니다.

❖ 과세물건

- 과세객체 또는 과세대상이라고도 부르며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소득, 수익, 재산 등을 말합니다.

❖ 과세표준

- 「지방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면적 또는 가액(價額) 등을 말합니다.

❖ 세 율

-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할 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 또는 금액입니다.

☞ 납부세액의 산출방법 : 과세표준 × 세율 = 납부세액

❖ 납세의무의 성립 · 확정 · 소멸

• 납세의무는 성립 → 확정 → 소멸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첫째, 납세의무의 성립은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 등 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을 때 추상적으로 납세의무가 성립되며, 이 때에는 세액이 얼마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둘째, 납세의무의 확정은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과세관청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을 의미하며, 지방세 납세의무의 확정방식은 신고납부(국세 : 신고납세), 보통징수(국세 : 부과과세), 특별징수(국세 : 원천징수)라는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셋째, 납세의무의 소멸은 조세채무의 소멸을 뜻하는데,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소멸사유로는 지방세의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 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이 있습니다.

❖ 신고납부

•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말하며,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됩니다.

❖ 보통징수

• 과세관청에서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여 징수하는 방식입니다.

❖ 특별징수

• 국세에 있어서의 원천징수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특별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가산세

•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신고납부 의무 등)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 신고납부 의무의 위반 정도에 따라 10~40%

☞ 납부지연가산세

납부지연 형태	납부지연 기간	가산세율	한도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법정 납부기한 경과시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 까지의 일수	1일 0.022%	75%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 경과시 ※ '24.1.1.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납부기한 경과시 1회	3%	없음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매 월 0.66%	60개월

❖ 가산금 ('24.1.1.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에 대하여 적용)

- 부과고지되는 지방세에 있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미납세금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되는 금액(중가산금)을 말합니다.

☞ 가산금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 가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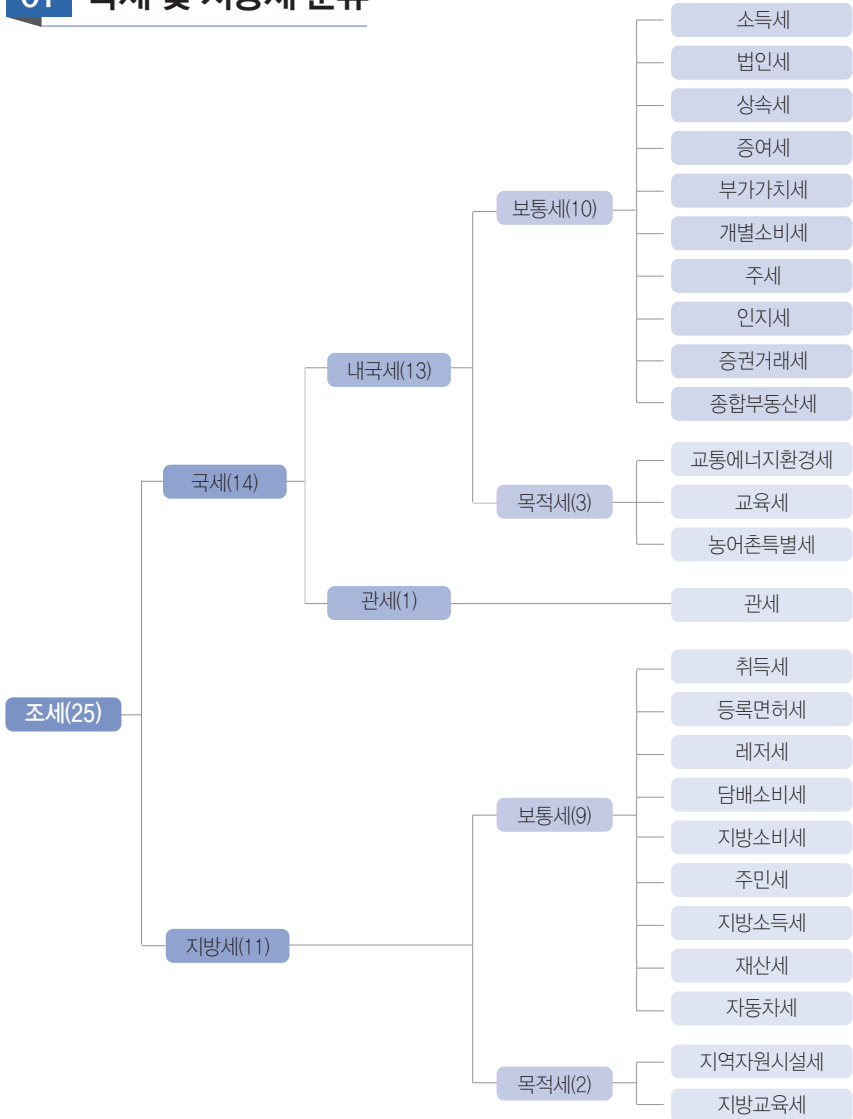
☞ 증가산금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때마다 0.75% 가산(60개월 한도)

❖ 체납처분

-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이 발부되고, 독촉기한 내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과세대상 물건 및 기타 납세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집행하고 압류재산의 매각, 매각대금의 배분 및 청산의 절차를 밟아 납세의무를 강제적으로 충족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3. 지방세 구조

01 국세 및 지방세 분류



02 지방세의 분류

세 목		도	특별시	광역시(구)	광역시(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등록 면허세	등록분	도세	자치구세	자치구세	시세	특별자치시세 특별자치도세				
	면허분									
취득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분		시세 군세	시세			시세	군세		
	소유분									
주민세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재산세	도시지역분	자치구세			자치구세	자치구세			자치구세	
	재산분									50%
										50%

※ 보통세(9개) : 등록면허세, 취득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목적세(2개)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지방소비세 : 도세·특별시세·광역시세 중 일부가 시·군·구세임

4. 지방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세 목		납세의무 성립일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등록 면허세	등록분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를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때
	면허분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1월)의 1일
레저세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는 때
담배소비세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搬出)하거나 국내로 반입(搬入)하는 때
지방소비세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주민세	개인분· 사업소분	과세기준일(7월 1일)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
지방소득세	개인지방소득 법인지방소득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특별징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자동차세	소유분	납기가 있는 달(6월·12월)의 1일
	주행분	과세표준이 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지역자원 시설세	발전용수	발전용수를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에 사용하는 때
	지하수	지하수를 채수(採水)하는 때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때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를 입항·출항하는 때
	원자력발전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
	화력발전	화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
	건축물·선박	과세기준일(6월 1일)
지방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수시분 지방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5. 지방세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세 목	납부방법	납부기간 · 납부기한
취 득 세	· 신고납부	· 취득일부터 60일과 등기 · 등록일 중 빠른 날까지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상속 외 무상취득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등록면허세	· 신고납부	· 등록분 : 등기 · 등록하기 전까지(등기 · 등록신청서 접수하는 날까지) · 면허분(수시분) :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 보통징수	· 면허분(정기분) : 1.16.~1.31.
레 저 세	· 신고납부	· 다음 달 10일까지
담 배 소비세	· 신고납부	·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 : 다음 달 20일까지 · 입국자 휴대품 및 외국 탁송품 : 세관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
지방소비세	· 특별징수	· 지방소비세*를 징수한 세무서장 · 세관장이 다음 달 20일까지 납입관리자에게 납입 * 부가가치세에 포함하여 신고납부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지방소비세도 신고 납부한 것으로 봄 [1기] (예정) 4.1.~25./ (확정) 7.1.~25. [2기] (예정) 10.1.~25./ (확정) 다음연도 1.1.~25. · 납입관리자가 시 · 도별 안분하여 25일까지 각 시 · 도에 납입
주 민 세	· 신고납부	· 사업소분 : 8.1.~8.31. · 종업원분 : 다음 달 10일까지
	· 보통징수	· 개인분 : 8.16.~8.31.
지방소득세	· 신고납부	· 법인지방소득세 :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 이내 · 개인지방소득세 : 종합 · 퇴직소득분 : (확정) 5.1.~5.31. 양도소득분 : 「소득세법」의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 특별징수	· 특별징수세액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재 산 세	· 보통징수	· 주택(1/2) · 건축물 · 선박 · 항공기분 : 7.16.~7.31. · 주택(1/2) · 토지분 : 9.16.~9.30. ※ 주택분 7월에 전액고지
		강화군 : 산출세액 20만원 이하 남동구, 서구 : 산출세액 10만원 이하 옹진군 : 산출세액 5만원 이하
자 동 차 세	· 보통징수	· 제1기분 : 6.16.~6.30. · 제2기분 : 12.16.~12.31.
	· 신고납부	· 연세액 일시납부(1, 3, 6, 9월) / 분할납부(3, 6, 9, 12월)
지 역 자 원 시 설 세	· 신고납부	· 특정자원 · 특정시설분 : 다음 달 10일까지
	· 보통징수	· 소방분 : [주택(1/2) · 건축물 · 선박] 7.16.~7.31. / [주택(1/2)] 9.16.~9.30.
지방교육세	· 신고납부	· 취득세 · 등록면허세(등록분) · 레저세 · 담배소비세 ·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납부시
	· 보통징수	· 주민세(개인분) · 재산세 · 자동차세 납부기한까지
수 시 부 과	· 보통징수	· 수시부과 납세고지서의 납기까지(일반적으로 납세고지 받은 달의 말일) - 신고 후 미납부 및 무신고 · 과소신고에 대한 수시부과 - 기타 과세누락분 수시부과

6. 지방세 세율

세 목		과 세 대 상	세 율
취 득 세		부동산, 차량 등 취득	일반세율 : 2.8%, 3.5%, 4.0% 등 유상취득(주택) : 1.0%~3.0% 중과세율 : 4.0%, 8.0%, 12.0% 등
등 록 면허세	등 록 분	부동산 등기	보존(0.8%), 이전(1.5%, 2.0%), 설정(0.2%)
		선박 등기	소유권(0.02%), 설정(0.2%), 기타(1만5천원/건)
		차량의 등록	소유권(5%, 2%), 설정(0.2%), 기타(1만5천원/건)
		기계장비 등록	소유권(1%), 설정(0.2%), 기타(1만원/건)
	면 허 분	법인등기	영리(0.4%), 비영리(0.2%), 기타(1만2천5백원·4만2백원/건)
레 저 세	승차(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 총액	18,000원~67,500원(군지역 4,500원~27,000원)	
담 배 소비세		담배사업법 상 담배 또는 이와 유사한 것	발매액의 10%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국세)	부가가치세액의 25.3% 민간최종소비지출지표에 지역별 가중치 적용배분
주민세	개인분	개인(세대주)	10,000원
	사업소분	개인사업자	개인[(50,000~75,000원)+330㎡초과시250원/㎡]
		법인사업자	법인[(50,000~300,000원)+330㎡초과시250원/㎡] ※ 폐수 또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 500원/㎡
종업원분	급여액	급여총액의 0.5%	
지 방 소득세	개인지방 소득세	종합소득, 퇴직소득	0.6%~4.5%
		양도소득	0.6%~7.0%
		특별징수	원천징수액의 10%
	법인지방 소득세	법인소득	0.9%~2.4%
		특별징수	원천징수액의 10%
재산세	재산세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토지 (종합) 0.2~0.5%, (별도) 0.2~0.4% (분리) 전, 담, 과수원, 목장용지 및 밭 : 0.07%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4% 그 밖의 토지 : 0.2% 건축물 0.25%, 선박(일반) 0.3%, (고급) 5%, 항공기 : 0.3%
		주택	주택 0.1~0.4% ※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세율특례 : 0.05%~0.35% (‘21~’26)
	도시지역분	토지, 건축물, 주택	0.14%
자 동 차 세	소유분	승용자동차	영업용 18~24원/cc, 비영업용 80~200원/cc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2만5천원~11만5천원 6천6백원~15만7천5백원
	주행분	교통·에너지·환경세(국세)	교통세액의 36%(탄력세율 26%, 09.5.21)
지 역 자 원 시설세	소방분	건축물, 선박	재산가액의 0.04~0.12%
	특정 자원분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발전용수 2원/10㎡, 지하수 20~200원/㎡, 지하자원 0.5%
	특정 시설분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원자력발전 1원/kwh, 화력발전 0.6원/kwh
지 방 교육세	취득세액(2%)의 20%, 등록면허세액(등록분)의 20%, 레저세액의 40%, 담배소비세액의 43.99%, 주민세액(개인분·사업소분)의 25%(군지역은 10%), 재산세액(도시지역분제외)의 20%, 자동차세액의 30%		

7. 지방세 월별 일람표

월별	지방세		국세
	광역시세	군·구 세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9월말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1.31.한) ※ (군세) 강화군, 옹진군 자동차세(소유분) 연세액 일시납부(1.31.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록면허세(면허분) 납기(1.31.한) (※군의 경우 시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1.25.한)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세(소유분) 연세액 일시납부/분할납부(3.31.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3.31.한)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4.30.한) ※ (군세) 강화군, 옹진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4.25.한)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지방소득세(종합·퇴직소득분) 확정신고 납부(5.31.한) ※ (군세) 강화군, 옹진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합·퇴직·양도소득세 확정신고(5.31.한)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세(소유분)(1기분) 납기(6.30.한) 자동차세(소유분) 연세액 일시납부/분할납부(6.30.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6.30.한)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월말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7.31.한) ※ (군세) 강화군, 옹진군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확정신고납부(7.31.한) ※ (군세) 강화군, 옹진군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주택(1/2)·건축물·선박) 납기(7.31.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산세(주택(1/2)·건축물·선박·항공기분) 납기(7.31.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7.25.한)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세(개인분) 납기(8.31.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8.31.한)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세(소유분) 연세액 일시납부/분할납부(9.30.한)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주택(1/2)) 납기(9.30.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산세(주택(1/2)·토지분) 납기(9.30.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9.30.한)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6월말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10.31.한) ※ (군세) 강화군, 옹진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10.25.한)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합소득세 중간예납(11.30.한)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세(소유분)(2기분) 납기(12.31.한) 자동차세(소유분) 연세액 분할납부(12.31.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12.31.한) 종합부동산세 납기(12.15.한)
연중(매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레저세 : 매월 10일한 담배소비세 : 매월 20일한 지방소비세 : 매월 25일한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 매월 10일한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특정시설분) : 매월 10일한 자동차세(주행분) : 매월 말일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세(중업원분) : 매월 10일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에너지·환경세(매월 말일한) 원천징수 소득세 등(매월 10일한)
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득세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자동차세 일할계산 수시부과 무신고·과소신고분 수시부과 기타 과세누락분 수시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록면허세 : 각종 등기·등록 및 인·허가를 받을 때 무신고·과소신고분 수시부과 기타 과세누락분 수시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신고·과소신고분 수시부과 기타 과세누락분 수시부과

※ 신고, 납부 등에 관한 기한이 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함

II 지방세 세목별 개요

1. 취득세	27
2. 등록면허세	34
3. 레저세	35
4. 담배소비세	36
5. 지방소비세	37
6. 주민세	38
7. 지방소득세	39
8. 재산세	41
9. 자동차세	42
10. 지역자원시설세	44
11. 지방교육세	45

2025년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1. 취득세

부동산, 선박,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등을 취득*한 자에게 과세하는 세금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입목·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요트회원권 취득자			
과세표준	○취득당시의 가액(사실상 취득가격, 시가인정액, 시가표준액 등) ○연부취득인 경우 연부금액			
세율	○일반 부동산 유상취득 : 4% ○주택 유상거래 취득 : 1~3% - 6억이하 1% / 6억초과~9억이하 1~3% / 9억초과 3% ※ 주택 유상거래 중과 └ 조정대상지역 1세대2주택, 비조정대상지역 1세대3주택 : 8% └ 법인, 조정대상지역 1세대3주택 이상, 비조정대상지역 1세대4주택 이상 : 12% ○과밀억제권역 및 대도시 내 법인·공장 등 중과 - 과밀억제권역 : 표준세율+4% / 대도시 : (표준세율×3)-4% ○사치성재산(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중과 : 표준세율+8% ※ 물건별·유형별 표준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 참조			
취득시기	○유상승계취득 :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등록일 중 빠른 날 ○무상취득 : 증여계약일 또는 상속(유증)개시일 ○건축물 건축·개수 : (임시)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신고납부시 첨부서류	○매매계약서, 잔금영수증, 법인지부, 등기권리증 등 ○건축물 사용승인서, 공사원가명세서 등 ○분양계약서, 분양대금납부영수증 등 관련 서류 ○토지·건물 수용확인서(대체취득 시)			
납기	○취득일부터 60일과 등기·등록일 중 빠른 날까지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상속 외 무상취득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가산세 용	가산세		가산세율	
	○무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미신고시	일반(사기·부정)	20%(40%)
	○과소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소신고시	일반(사기·부정)	10%(40%)
	○납부지연가산세	납부기한(납세고지)까지 미납부(과소납부)시	1일	0.022%
		납세고지서 납부기한 경과시	1회	3%
	납세고지서 납부기한 1개월 경과시	매월	0.66%	
※ 세부 세율은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5조 참조				

II. 지방세 세부별 개요

참고 1 취득세 세율표 (표준세율, 중과세율)

❖ **표준세율**

구 분			세 율			
부동산	상속취득		농지	2.3%		
			농지 외	2.8%		
	상속 외 무상취득		일반	3.5%		
			비영리사업자	2.8%		
	원시취득		2.8%			
	공유물의 분할 등의 취득		2.3%			
	합유·총유물의 분할 취득		2.3%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농지	3.0%		
			농지 외	4.0%		
주택 유상거래 취득(일반)		1~3%				
기타	선박	상속취득		2.5%		
		등기·등록대상 선박 (소형선박제외)		상속 외 무상취득	3.0%	
				원시취득	2.02%	
				수입·주문건조 취득	2.02%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3.0%	
				소형선박(동력수상레저기구 포함)	2.02%	
			그 밖의 선박	2.0%		
	차량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경자동차	4.0%	
				경자동차 이외	7.0%	
		이륜자동차		2.0%		
		그 밖의 자동차		비영업용	경자동차	4.0%
				영업용	경자동차 이외	5.0%
				영업용	4.0%	
			위 외의 자동차(미등록대상 차량 등)	2.0%		
	기계장비		기계장비		3.0%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		2.0%	
	항공기	항공안전법 제7조 단서에 따른 항공기		2.0%		
		그 밖의 항공기		최대이륙 중량 5,700kg 미만	2.02%	
				최대이륙 중량 5,700kg 이상	2.01%	
	입목		2.0%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		2.0%				
골프·승마·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이용·요트회원권		2.0%				

* 세부 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세율), 제12조(부동산 외 세율) 참조

❖ **중과세율**

구 분		세 율
과밀억제 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1 과밀억제권역에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용 신·중축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취득	표준세율 + 4%
	①-2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유치지역·공업지역 제외)에서의 공장 신·증설 사업용 과세물건의 취득	※세목통합 전 취득세만 중과
	②-1 대도시(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 제외)에서의 법인의 설립·전입·지점설치 등에 따른 부동산 취득	(표준세율×3) - 4%
	②-2 대도시(유치지역·공업지역 제외)에서의 공장 신·증설에 따른 부동산 취득	※ 세목통합 전 등록세만 중과
	③ 골박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표준세율 + 8%
④ ①과 ②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표준세율× 3	
⑤ ②와 ③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표준세율×3) + 4%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 법인	㉠ 12%
	㉡ 1세대2주택(조정대상지역) 또는 1세대3주택(비조정대상지역)	㉡ 8%
	㉢ 1세대3주택(조정대상지역) 이상 또는 1세대4주택(비조정대상지역) 이상	㉢ 12%
② 조정대상지역 주택(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무상취득	8%	
③ ① 또는 ②+고급주택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① 또는 ② 세율 + 8%	

※ 세부 세율은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참조

❖ **세율의 특례**

구 분	세 율
① 형식적인 취득으로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 - 환매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 상속으로 인한 취득(1가구 1주택, 자경농지), 공유물의 분할 등으로 인한 취득,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별채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임목의 취득	표준세율 - 2% ※ 세목통합 전 등록세만 과세
② 간주취득 등의 세율 특례 - 건축물의 개수로 인한 취득, 선박·차량·기계장비의 종류변경, 토지의 지목변경, 과점주주의 취득,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수입 취득, 시설대여업자의 건설기계·차량 취득,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기계장비·차량 취득, 택지공사 준공에 따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조성·설치에 따른 취득, 레저시설 등의 취득	2% ※ 세목통합 전 취득세만 과세

※ 세부 세율은 「지방세법」 제15조(세율의 특례) 참조

참고 2 취득세 과세대상

① 부동산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하며,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하고,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 포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지방세법」 제6조제2호 내지 제4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② 차량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말하며(「지방세법」 제6조제7호), 총 배기량 50cc 미만이거나 최고정격출력 4킬로와트 이하인 이륜자동차는 제외됨(「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그리고 원동기의 동력원이 휘발유인지 경유인지 또는 전기인지 등은 묻지 않으며, 차량 취득세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였다면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됨. 차량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취득하게 되면 과세한다는 점에서 등록된 자동차에 한하여 과세하는 자동차세와 다른 점임.

③ 기계장비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지방세법」 제6조제8호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조).

④ 항공기

사람이 탑승·조종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 항공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지방세법」 제6조제9호).

⑤ 선박

기선, 범선, 부선 및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배를 말함(「지방세법」 제6조제10호). 일반적으로 선박은 부양성, 적재성, 이동성이라는 특성이 있음.

⑥ 입목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을 말함(「지방세법」 제6조제11호).

⑦ 광업권

「광업법」에 따른 광업권을 말함(「지방세법」 제6조제12호).

⑧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권을 말함(「지방세법」 제6조제13호).

⑨ 양식업권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권을 말함(「지방세법」 제6조제13의2호).

⑩ 골프회원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지방세법」 제6조제14호).

⑪ 승마회원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승마장의 회원으로서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지방세법」 제6조제15호).

⑫ 콘도미니엄회원권

「관광광진흥법」에 따른 콘도미니엄과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지방세법」 제6조제16호).

⑬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종합 체육시설업에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권리를 말함(「지방세법」 제6조제17호).

⑭ 요트회원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요트장의 회원으로서 요트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지방세법」 제6조제18호).

참고 3 취득유형별 취득의 시기

구 분	취득의 시기	비 고
무상승계취득	<p>계약일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함)</p> <p>※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p>	<p>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해조서·인낙조서(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제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 2. 공정증서(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6에 따른 계약해제 신고서(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
유상승계취득	<p>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말하고,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함)</p> <p>※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p>	<p>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해조서·인낙조서(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해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 2. 공정증서(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증받은 것만 해당)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6에 따른 계약해제 신고서(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 4.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된 경우만 해당)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선박	<p>(주문을 받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조립·건조하는 경우)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p> <p>(제조·조립·건조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등기 또는 등록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p>	
수입에 따른 취득	<p>해당 물건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날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신고 필증 교부일)</p>	<p>다만, 차량등의 실수요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차량등을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을 승계취득일로 보며, 취득자의 편의에 따라 수입물건을 우리나라에 반입하지 않거나 보세구역을 경유하지 않고 외국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봄.</p>

구 분	취득의 시기	비 고
연부취득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 ※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	
건축물의 건축 또는 개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함)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사용승인서에는 「도시개발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거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조합이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제2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매립·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 하는 경우	공사준공인가일	다만,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일·허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차량·기계장비 또는 선박의 종류변경에 따른 취득	사실상 변경한 날과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취득시효에 따른 취득 및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등기일 또는 등록일	

2. 등록면허세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기·등록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등록분과,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면허를 받는 자에게 과세하는 면허분으로 구분됨

납세의무자	○ 등록분 : 공부상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자 ○ 면허분 : 각종 면허를 받는 자																							
과세표준	○ 등록분 : 등록자가 신고한 등록 당시의 가액.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 면허분 :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및 별표1 참조)																							
세율	○ 등록분																							
	<table border="1"> <tr> <td rowspan="4">부동산 등기</td> <td>소유권 보존 등기</td> <td>0.8%</td> </tr> <tr> <td rowspan="2">소유권 이전 등기</td> <td>유상</td> <td>2% ※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 해당주택 : 해당 세율×0.5</td> </tr> <tr> <td>무상</td> <td>1.5%(상속:0.8%)</td> </tr> <tr> <td>지상권 저당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td> <td>0.2%</td> </tr> <tr> <td>선박 등기 또는 등록</td> <td>소유권</td> <td>0.02%</td> </tr> <tr> <td>차량 등록</td> <td>소유권(비영업용 승용)</td> <td>5%(경차:2%)</td> </tr> <tr> <td>기계장비 등록</td> <td>소유권</td> <td>1%</td> </tr> <tr> <td rowspan="2">법인 등기</td> <td>법인설립</td> <td>0.4%(비영리:0.2%)</td> </tr> <tr> <td>본점·주사무소 이전 지점·분사무소 설치</td> <td>건당 112,500원 건당 40,200원</td> </tr> </table> <p>※ 세부 세율은 「지방세법」 제28조(세율) 참조</p>	부동산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0.8%	소유권 이전 등기	유상	2% ※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 해당주택 : 해당 세율×0.5	무상	1.5%(상속:0.8%)	지상권 저당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0.2%	선박 등기 또는 등록	소유권	0.02%	차량 등록	소유권(비영업용 승용)	5%(경차:2%)	기계장비 등록	소유권	1%	법인 등기	법인설립	0.4%(비영리:0.2%)	본점·주사무소 이전 지점·분사무소 설치
부동산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0.8%																					
	소유권 이전 등기		유상	2% ※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 해당주택 : 해당 세율×0.5																				
			무상	1.5%(상속:0.8%)																				
	지상권 저당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0.2%																						
선박 등기 또는 등록	소유권	0.02%																						
차량 등록	소유권(비영업용 승용)	5%(경차:2%)																						
기계장비 등록	소유권	1%																						
법인 등기	법인설립	0.4%(비영리:0.2%)																						
	본점·주사무소 이전 지점·분사무소 설치	건당 112,500원 건당 40,200원																						
	○ 면허분																							
	<table border="1"> <thead> <tr> <th>종별</th> <th>구 지역</th> <th>군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1종</td> <td>67,500원</td> <td>27,000원</td> </tr> <tr> <td>2종</td> <td>54,000원</td> <td>18,000원</td> </tr> <tr> <td>3종</td> <td>40,500원</td> <td>12,000원</td> </tr> <tr> <td>4종</td> <td>27,000원</td> <td>9,000원</td> </tr> <tr> <td>5종</td> <td>18,000원</td> <td>4,500원</td> </tr> </tbody> </table>	종별	구 지역	군 지역	1종	67,500원	27,000원	2종	54,000원	18,000원	3종	40,500원	12,000원	4종	27,000원	9,000원	5종	18,000원	4,500원					
종별	구 지역	군 지역																						
1종	67,500원	27,000원																						
2종	54,000원	18,000원																						
3종	40,500원	12,000원																						
4종	27,000원	9,000원																						
5종	18,000원	4,500원																						
납기	○ 등록분 : 등기·등록관서 접수일까지 신고·납부 ※ 등록 후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전입·지점설치 등 종과세율 적용대상이 된 경우에는 해당 사무소·사업장 설치일 또는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 면허분 - 신규 또는 변경의 경우(수시분) :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 유효기간이 없거나 1년을 초과하는 경우(정기분) : 매년 1.16.~1.31.																							
가산세율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가산세</th> <th colspan="2">가산세율</th> </tr> </thead> <tbody> <tr> <td>○무신고가산세</td> <td>법정신고기한까지 미신고시</td> <td>일반(사기·부정)</td> <td>20%(40%)</td> </tr> <tr> <td>○과소신고가산세</td> <td>법정신고기한까지 과소신고시</td> <td>일반(사기·부정)</td> <td>10%(40%)</td> </tr> <tr> <td rowspan="3">○납부지연가산세</td> <td>납부기한(납세고지)까지 미납부(과소납부)시</td> <td>1일</td> <td>0.022%</td> </tr> <tr> <td>납세고지서 납부기한 경과시</td> <td>1회</td> <td>3%</td> </tr> <tr> <td>납세고지서 납부기한 1개월 경과시</td> <td>매월</td> <td>0.66%</td> </tr> </tbody> </table> <p>※ 세부 내용은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5조 참조</p>	가산세		가산세율		○무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미신고시	일반(사기·부정)	20%(40%)	○과소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소신고시	일반(사기·부정)	10%(40%)	○납부지연가산세	납부기한(납세고지)까지 미납부(과소납부)시	1일	0.022%	납세고지서 납부기한 경과시	1회	3%	납세고지서 납부기한 1개월 경과시	매월	0.66%	
가산세		가산세율																						
○무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미신고시	일반(사기·부정)	20%(40%)																					
○과소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소신고시	일반(사기·부정)	10%(40%)																					
○납부지연가산세	납부기한(납세고지)까지 미납부(과소납부)시	1일	0.022%																					
	납세고지서 납부기한 경과시	1회	3%																					
	납세고지서 납부기한 1개월 경과시	매월	0.66%																					

3. 레저세

경륜, 경정, 경마, 소싸움경기의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 발매행위를 대상으로 그 사업자에게 과세하는 세금				
납세의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륜, 경정, 경마, 소싸움경기 사업을 하는 자 - 국민체육진흥공단 · 부산시설공단 · 창원레포초파크(경륜), 국민체육진흥공단(경정), 한국마사회(경마), 청도공영사업소(소싸움) 			
과세표준 및 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총액의 100분의 10 - 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 전국 시·군·구 안분 ※ 지방교육세 : 레저세액의 100분의 40 			
신고납부 및 안분기준	○ 경륜장 등(본장)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하는 경우			
	구분	경륜장 등 소재지 (본장) 관할 시·군·구		
	경륜장 등 직접발매	100% 신고납부		
	장외발매소	기존	50% 신고납부	
		신설(5년간)	80% 신고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장 : 경륜(부산, 창원, 광명), 경정(하남), 경마(과천, 부산, 제주), 소싸움(청도)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매하는 경우(2022년 시행) 				
구분	경륜장 등 소재지 (본장) 관할 시·군·구	각 시·군·구* (19세이상 인구기준 안분)		
기존	50% 신고납부	50% 신고납부		
신설(5년간)	80% 신고납부	20% 신고납부		
$* \text{각 시·군·구 안분비율} = \frac{\text{각 시·군·구의 19세 이상 인구}}{\text{전국 19세 이상 인구}}$				
납기	○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가산세율	구분	가산세	가산세율	
	신고납부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5조)	무신고	법정신고기한까지 미신고시	일반 20% 사기·부정 40%
		과소신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소신고시	일반 10% 사기·부정 40%
		납부지연	납부기한(납세고지)까지 미납부시	1일 0.022%
			납세고지서 납부기한 경과시	1회 3%
	납세고지서 납부기한 1개월 경과시	매월 0.66%		
레저세 (「지방세법」 제45조)	장부 비치의 의무 불이행		10%	

4. 담배소비세

제조담배·수입담배 등 담배를 대상으로 과세하며, 담배판매가격에 일정금액(담배소비세)이 포함되어 있는 세금

담배의정의	○「담배사업법」상 담배 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연초(煙草)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				
납세의무자	○담배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 ○입국자(휴대품, 탁송품, 별송품), 국제우편 등으로 반입하는 자 ○기타 제조 및 국내반입자, 면세담배 부당 처분자 등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 담배의 개비 수, 중량(g)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ml)				
	피우는 담배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제1종 결련	20개비당	1,007원	
		제2종 파이프담배	1g당	36원	
		제3종 엽결련	"	103원	
		제4종 각련	"	36원	
		제5종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1ml당	628원	
		연초 및 연초 고품률 사용	결련형 : 20개비당	897원	
			기타형 : 1g당	88원	
	제6종 물담배	1g당	715원		
씹거나 머금은 담배	"	364원			
냄새 맡는 담배	"	26원			
※ 지방교육세 : 담배소비세액의 10,000분의 4,399					
납 기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해 다음 달 20일까지 신고납부				
담 배 반 출 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경우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신고				
가 산 세 율	구 분	가산세		가산세율	
	신고납부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5조)	무신고	법정신고기한까지 미신고시		일반 20% 사기·부정 40%
		과소신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소신고시		일반 10% 사기·부정 40%
		납부지연	납부기한(납세고지)까지 미납부시		1일 0.022%
	납세고지서 납부기한 경과시		1회 3%		
			납세고지서 납부기한 1개월 경과시		매 월 0.66%
담배소비세 신고의무 (「지방세법」 제61조)	- 폐업시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미제출 - 기장의무 불이행		10%		
	- 미납세반출·과세면제 담배 타용도 사용 - 담배 반출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부정한 방법 세액공제·환급받는 경우 - 과세표준 기초 은폐 및 위장하는 경우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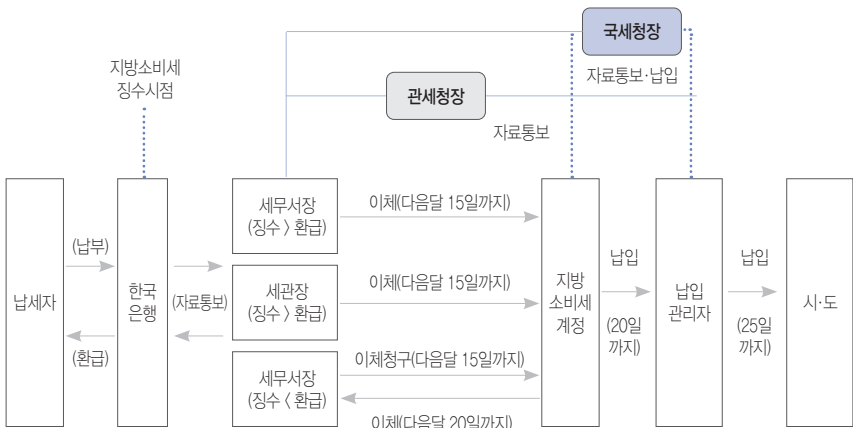
5. 지방소비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25.3%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여 과세하는 세금

납세의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납세의무자 - 사업자, 재화를 수입하는 자
과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과세대상 -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재화의 수입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 + 가산세
세율	○ 과세표준액의 25.3/100
신고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지방소비세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 - 납세의무자가 지방소비세를 별도로 신고납부하지 않고, 특별징수의무자(세무서장, 세관장)가 징수하여 납입

II. 지방세세목별 개요

◆ 지방소비세 징수업무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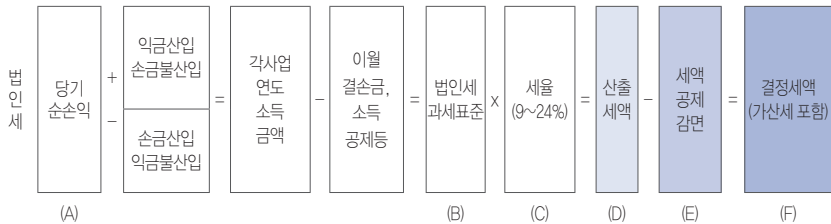
7.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2013년 소득까지 소득세·법인세의 부가세 형태(결정세액의 10%)로 운영되었으나, 2014년 소득부터는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준용하고 세율, 세액 공제·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관계법에서 별도 규정하는 독립세 형태로 변경

납세의무자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한 과세소득		
과세대상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액		
과세표준	○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구분	과세표준	세율
종합소득(누진세율)	1천400만원이하	과세표준의1천분의6	
	1천400만원초과5천만원이하	8만4천원+(1천400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1천분의15)	
	5천만원초과8천800만원이하	62만4천원+(5천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1천분의24)	
	8천800만원초과1억5천만원이하	153만6천원+(8천800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1천분의35)	
	1억5천만원초과3억원이하	370만6천원+(1억5천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1천분의38)	
	3억원초과5억원이하	940만6천원+(3억원을초과하는금액의1천분의40)	
	5억원초과10억원이하	1천740만6천원+(5억원을초과하는금액의1천분의42)	
	10억원초과	3천840만6천원+(10억원을초과하는금액의1천분의45)	
	퇴직소득	퇴직소득금액-퇴직소득공제	과세표준×개인지방소득세기본세율×근속연수/12
	양도소득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과세표준	자산 유형 및 보유형태별 세율(0.6%~7.0%)
특별징수(부가세율)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액	원천징수액의 10%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구분	과세표준	세율
	법인소득(누진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1천분의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80만원+(2억원을초과하는금액의1천분의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억7천8백만원+(200억원을초과하는금액의1천분의21)	
3천억원 초과		62억5천8백만원+(3천억원을초과하는금액의1천분의24)	
양도소득 과세특례	부동산양도시표준세율로산정한세액에특례에서정한각세율로산정한세액을추가하여납부		
특별징수(부가세율)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액	원천징수액의 10%	

납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지방소득세(종합·퇴직소득분) : 5.1.~5.31. - 납부할 세액 1백만원 초과시, 2개월 이내 분납가능 ○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 국세(양도소득분)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 ○ 법인지방소득세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 납부할 세액 1백만원 초과시, 1개월 이내 분납가능(중소기업은 2개월) ○ 특별징수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가 산 세 액	<p>■ 개인지방소득세(종합·퇴직·양도소득분)·법인지방소득세</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가산세</th>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가산세율</th> </tr> </thead> <tbody> <tr> <td>○무신고가산세</td> <td>법정신고기한까지 미신고시</td> <td>일반(사기·부정)</td> <td>20%(40%)</td> </tr> <tr> <td>○과소신고가산세</td> <td>법정신고기한까지 과소신고시</td> <td>일반(사기·부정)</td> <td>10%(40%)</td> </tr> <tr> <td>○초과환급신고가산세</td> <td>법정신고기한까지 환급받을 세액을 많이 신고시</td> <td>일반(사기·부정)</td> <td>10%(40%)</td> </tr> <tr> <td rowspan="3">○납부지연가산세</td> <td>납부기한(납세고지)까지 미납부(과소납부)시</td> <td>1일</td> <td>0.022%</td> </tr> <tr> <td>납세고지서 납부기한 경과시</td> <td>1회</td> <td>3%</td> </tr> <tr> <td>납세고지서 납부기한 1개월 경과시</td> <td>매월</td> <td>0.66%</td> </tr> </tbody> </table> <p>※ 세부 내용은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5조 참조</p> <p>■ 특별징수</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가산세</th>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가산세율</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td> <td>납부기한까지 미납부(과소납부)시</td> <td>1회</td> <td>3%</td> </tr> <tr> <td>납부기한(납세고지)까지 미납부(과소납부)시</td> <td>1일</td> <td>0.022%</td> </tr> <tr> <td>납세고지서 납부기한 경과시</td> <td>1회</td> <td>0.66%</td> </tr> <tr> <td>납세고지서 납부기한 1개월 경과시</td> <td>매월</td> <td>0.66%</td> </tr> </tbody> </table> <p>※ 세부 내용은 「지방세기본법」 제56조 참조</p>	가산세		가산세율		○무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미신고시	일반(사기·부정)	20%(40%)	○과소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소신고시	일반(사기·부정)	10%(40%)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환급받을 세액을 많이 신고시	일반(사기·부정)	10%(40%)	○납부지연가산세	납부기한(납세고지)까지 미납부(과소납부)시	1일	0.022%	납세고지서 납부기한 경과시	1회	3%	납세고지서 납부기한 1개월 경과시	매월	0.66%	가산세		가산세율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납부기한까지 미납부(과소납부)시	1회	3%	납부기한(납세고지)까지 미납부(과소납부)시	1일	0.022%	납세고지서 납부기한 경과시	1회	0.66%	납세고지서 납부기한 1개월 경과시	매월	0.66%
가산세		가산세율																																										
○무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미신고시	일반(사기·부정)	20%(40%)																																									
○과소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소신고시	일반(사기·부정)	10%(40%)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환급받을 세액을 많이 신고시	일반(사기·부정)	10%(40%)																																									
○납부지연가산세	납부기한(납세고지)까지 미납부(과소납부)시	1일	0.022%																																									
	납세고지서 납부기한 경과시	1회	3%																																									
	납세고지서 납부기한 1개월 경과시	매월	0.66%																																									
가산세		가산세율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납부기한까지 미납부(과소납부)시	1회	3%																																									
	납부기한(납세고지)까지 미납부(과소납부)시	1일	0.022%																																									
	납세고지서 납부기한 경과시	1회	0.66%																																									
	납세고지서 납부기한 1개월 경과시	매월	0.66%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구조



※ 2013년도 귀속분까지(국세 부가세 형식) : 국세 결정세액(F) × 10% = 법인지방소득세

※ 2014년도 귀속분부터(독립세 전환) : 국세 과세표준(B) × 독립세율 - 공제·감면 =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법인세액) (0.9~2.4%)

8. 재산세

재산의 보유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성격의 군·구 독립세	
납세의무자	○ 매년 6월1일 현재 과세대상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과세대상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납세지	○ 토지, 건축물, 주택 : 물건 소재지 관할 군·구 ○ 항공기 : 등록원부 상 정치장 소재지 관할 군·구(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자 주소지) ○ 선박 : 선적항 소재지 관할 군·구(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 정계장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
과세표준	○ 토지(주택이외 건축물 부속토지, 나대지 등)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 × 70% ○ 주택(부속토지 포함) : 60% ※ 단 1주택은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 ~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 ○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표준세율	○ 나대지 등 종합합산대상 토지 : 0.2~0.5% (3단계 누진세율) ○ 사업용건물의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대상 토지 : 0.2~0.4% (3단계 누진세율) ○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0.07% (저율 분리과세 대상 토지)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4% (고율 분리과세 대상 토지) ○ 기타 분리과세 대상 토지 : 0.2% ※ 탄력세율 :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내 가감조정 ○ 주택이외 건축물 : 0.25% (단일세율) ○ 골프장, 고급오락장 : 4% ○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 : 0.5% ○ 주택 : 0.1%~0.4% (4단계 누진세율) -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0.05%p 인하, 0.05%~0.35%(21~26, 6년) ○ 선박, 항공기 : 0.3% ※고급선박 : 5% ○ 대도시내 신·증설 공장 : 1.25% (5배 중과세율)
납기	○ 선박, 항공기, 건축물, 주택의 1/2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토지, 주택의 1/2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세부담상한	○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 150% ○ 주택 :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 : 10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 110%, 6억원 초과 130% ※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액(징수액)으로 한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하여는 각각의 과세표준에 해당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1,000분의 1.4를 적용한 세액을 재산세에 합산하여 부과 ※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1,000분의 1.4)은 조례로 1,000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II. 지방세세목별 개요

9. 자동차세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와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이하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로 구분

납 세 의 무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분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 ○ 주행분 :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납세의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용자동차(연세액)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영 업 용</th> <th colspan="2">비 영 업 용</th> </tr> <tr> <th>배 기 량</th> <th>cc당 세액</th> <th>배 기 량</th> <th>cc당 세액</th> </tr> </thead> <tbody> <tr> <td>1,000cc이하</td> <td>18원</td> <td rowspan="2">1,000cc이하</td> <td rowspan="2">80원</td> </tr> <tr> <td>1,600cc이하</td> <td>18원</td> </tr> <tr> <td>2,000cc이하</td> <td>19원</td> <td rowspan="2">1,600cc이하</td> <td rowspan="2">140원</td> </tr> <tr> <td>2,500cc이하</td> <td>19원</td> </tr> <tr> <td>2,500cc초과</td> <td>24원</td> <td>1,600cc초과</td> <td>200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합자동차(연세액)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영 업 용</th> <th>비 영 업 용</th> </tr> </thead> <tbody> <tr> <td>고 속 버 스</td> <td>100,000원</td> <td>-</td> </tr> <tr> <td>대형전세버스</td> <td>70,000원</td> <td>-</td> </tr> <tr> <td>소형전세버스</td> <td>50,000원</td> <td>-</td> </tr> <tr> <td>대형일반버스</td> <td>42,000원</td> <td>115,000원</td> </tr> <tr> <td>소형일반버스</td> <td>25,000원</td> <td>65,000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물자동차(연세액)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금 액</th> </tr> </thead> <tbody> <tr> <td>영 업 용</td> <td>6,600원 ~ 45,000원</td> </tr> <tr> <td>비 영 업 용</td> <td>28,500원 ~ 157,500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000분의 260 	영 업 용		비 영 업 용		배 기 량	cc당 세액	배 기 량	cc당 세액	1,000cc이하	18원	1,000cc이하	80원	1,600cc이하	18원	2,000cc이하	19원	1,600cc이하	140원	2,500cc이하	19원	2,500cc초과	24원	1,600cc초과	200원	구 분	영 업 용	비 영 업 용	고 속 버 스	100,000원	-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구 분	금 액	영 업 용	6,600원 ~ 45,000원	비 영 업 용
영 업 용		비 영 업 용																																														
배 기 량	cc당 세액	배 기 량	cc당 세액																																													
1,000cc이하	18원	1,000cc이하	80원																																													
1,600cc이하	18원																																															
2,000cc이하	19원	1,600cc이하	140원																																													
2,500cc이하	19원																																															
2,500cc초과	24원	1,600cc초과	200원																																													
구 분	영 업 용	비 영 업 용																																														
고 속 버 스	100,000원	-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구 분	금 액																																															
영 업 용	6,600원 ~ 45,000원																																															
비 영 업 용	28,500원 ~ 157,500원																																															
세 배																																																

납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분(연세액의 1/2) : 1기분(6월 16일 ~ 6월 30일), 2기분(12월 16일 ~ 12월 31일) ○ 수시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말소등록, 승계취득 및 비과세(과세)차량이 과세(비과세)차량이 되는 경우, 영업용(비영업용)차량의 비영업용(영업용) 전환 시 일할 계산 - 이전·말소등록 시 이전(말소)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 연세액을 한꺼번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법 제128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세액공제 ○ 주행분 : 교통·에너지·환경세 납부기한까지 				
	가 산 세 적 용	가산세		가산세율	
○무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미신고시	일반 (사기·부정)	20%(40%)	주행
○과소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소신고시	일반 (사기·부정)	10%(40%)	
○납부지연가산세		납부기한(납세고지)까지 미납부(과소납부)시	1일	0.022%	주행 소유
		납세고지서 납부기한 경과시	1회	3%	
	납세고지서 납부기한 1개월 경과시	매월	0.66%		
※ 세부 내용은 「지방세기본법」 제53조 ~ 제55조 참조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해서는 다음과 같이 차령에 따라 경감률 적용 과세

3년미만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이상
-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10.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보전, 환경보호·개선, 안전·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 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목적세

<p>납 세 의 무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 제외)을 하는 자 ○ 지하수(세차장, 목욕탕, 공장 등)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하는 자 ○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입·출항 시키는 자 ○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 건축물, 선박의 소유자로서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
<p>과세대상 및 표준세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자원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전용수 : 발전에 이용된 물 10m³당 2원 - 지하수 : 음용수 1m³당 200원, 온천수 1m³당 100원, 기타 1m³당 20원 - 지하자원 : 채광된 광물가액의 0.5% ○ 특정시설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테이너 : 1티이유(TEU)당 15,000원 - 원자력발전 : 발전량 1킬로와트시(kWh)당 1원 - 화력발전 : 발전량 1킬로와트시(kWh)당 0.6원 ○ 소방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시설에 총당 : 건축물 및 선박가액의 0.04~0.12%(6단계 누진세율) - 화재위험 건축물은 2배 중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3층 이하 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학원, 노래연습장 등), 위락시설(무도장, 유흥주점 등), 문화집회시설(극장, 음식점 등), 숙박시설, 장례식장,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 -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은 3배 중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마트, 복합상영관(극장 제외), 백화점, 호텔,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 탄력세율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가감조정 가능(원자력·화력발전 제외)
<p>납 세 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자원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전용수 : 발전소의 소재지 - 지하수 : 채수공의 소재지 - 지하자원 :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 ○ 특정시설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테이너 : 컨테이너 취급 부두의 소재지 - 화력발전 : 발전소의 소재지 - 원자력발전 : 발전소의 소재지 ○ 소방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 건축물 소재지 - 선 박 : 선적항 소재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 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
<p>납 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자원·시설 : 매월 말일까지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소방분 : 재산세 규정 준용 보통징수(재산세 고지서에 병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 건축물, 주택의 1/2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주택의 1/2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11.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목적세

<p>납세의무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기계장비·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재산세(도시지역분 제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 																																		
<p>과세표준 및 세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표준 및 세율 <table border="1" data-bbox="297 609 989 1149"> <thead> <tr> <th>구분</th> <th>과세표준</th> <th>세율</th> <th>납부방법</th> </tr> </thead> <tbody> <tr> <td>1</td> <td>부동산·기계장비·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제외</td> <td>20/100</td> <td>신고납부</td> </tr> <tr> <td>2</td> <td>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 ※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제외</td> <td>20/100</td> <td>신고납부</td> </tr> <tr> <td>3</td> <td>레저세액</td> <td>40/100</td> <td>신고납부</td> </tr> <tr> <td>4</td> <td>담배소비세액</td> <td>4,399/10,000</td> <td>신고납부</td> </tr> <tr> <td>5</td> <td>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기본세율로 한정)세액</td> <td>25/100(구) 10/100(군)</td> <td>보통징수 신고납부</td> </tr> <tr> <td>6</td> <td>재산세액(도시지역분 제외)</td> <td>20/100</td> <td>보통징수</td> </tr> <tr> <td>7</td> <td>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액</td> <td>30/100</td> <td>보통징수</td> </tr> </tbody> </table>			구분	과세표준	세율	납부방법	1	부동산·기계장비·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제외	20/100	신고납부	2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 ※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제외	20/100	신고납부	3	레저세액	40/100	신고납부	4	담배소비세액	4,399/10,000	신고납부	5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기본세율로 한정)세액	25/100(구) 10/100(군)	보통징수 신고납부	6	재산세액(도시지역분 제외)	20/100	보통징수	7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액	30/100	보통징수
구분	과세표준	세율	납부방법																																
1	부동산·기계장비·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제외	20/100	신고납부																																
2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 ※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제외	20/100	신고납부																																
3	레저세액	40/100	신고납부																																
4	담배소비세액	4,399/10,000	신고납부																																
5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기본세율로 한정)세액	25/100(구) 10/100(군)	보통징수 신고납부																																
6	재산세액(도시지역분 제외)	20/100	보통징수																																
7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액	30/100	보통징수																																
<p>납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 납부하는 때 ○ 보통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세 개인분, 재산세, 자동차세 납부기한까지 																																		

II 지방세세목별 개요

2025년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Ⅲ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

1. 지방세 납부방법	49
2. 지방세 납부매체	52
3. 지방세 납부세액 공제 혜택	54
4. 디지털 지방세 홍보	55

2025년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1. 지방세 납부방법

지방세 납부방법

- 방문 납부 : 금융기관, CD/ATM기, 군·구청 세무부서
 - 전화 납부 : 폰뱅킹(ARS) ☎142-211
 - 인터넷 납부 : 위택스, 지로납부, 간편결제
 - 모바일 납부 : 스마트위택스, 금융앱, 간편결제
- ※ 인천시 지방세 안내 알림서비스 : 카카오톡 채널 “인천시 지방세” 채널 추가

구분	주요 내용	이용시간
방문 납부	■ 세무부서 방문 납부	근무시간 09:00~18:00
	■ 은행 창구 납부 -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저축은행 등	은행영업시간 09:00~16:00(평일)
	■ CD/ATM 납부 -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납부 - 본인, 타인세금(전자납부번호) 모두 가능	CD/ATM 영업시간 (은행별 상이함)
전화 납부	■ ARS 이용 납부 (☎142-211) - 음성 ARS : 신용카드 - 보이는 ARS :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 본인인증 후 전자납부번호 또는 주민번호로 타인납부 가능 - 법인은 납부 불가	07:00~23:30(연중)
인터넷 납부	■ 인터넷지로(금결원), 위택스(행안부)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 본인, 타인세금(전자납부번호, 납세번호, 간편번호)납부 가능 - 포인트사용, 할부수수료는 카드사마다 상이 확인 필요	00:30~23:30(연중) (은행별 상이함)
	■ 가상계좌(7개 은행) 납부 - 신한, 농협, 기업, 우리, 하나, 국민, 수협	00:30~22:00(연중)
	■ 은행 인터넷뱅킹 공과금 납부	00:30~23:30 (은행별 상이함)
모바일 납부	■ 스마트위택스 - 지방세 조회·납부, 환급금 조회·신청, 전자납부번호 납부, 납부 확인 등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 금융앱 - 금융기관 앱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 ■ 간편결제 - 카카오톡, 네이버 앱, 페이코 앱	00:30~23:30(연중) (은행별 상이함)

01 방문납부(금융기관, 군·구 세무부서)

-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쉽고, 편리하게 납부 가능
-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에서 통장 및 국내발생 모든 신용카드로 수수료 없이 조회·납부가능
 - ※ 다만, 방문 은행에서 발급한 카드 외에는 기기이용료 900원이 부과됨
- 본인의 카드·통장이 아닌 경우 또는 타인이 본인의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 고지서 상 전자납부번호를 알고 있으면 납부 가능

[CD/ATM 납부]

카드·통장투입 ▶ 지방세 선택 ▶ 납부 선택(현금-본인, 현금-타인, 신용-본인, 신용-타인)
▶ 비밀번호입력 ▶ 고지내역 조회 ▶ 납부할 내역확인, 납부건 선택 ▶ 납부, 영수증 출력

02 전화이용 납부(지방세·세외수입 ARS)

- 개요 : 전화한통으로 간편하게 인천시 지방세·세외수입을 납부할 수 있는 ARS 납부시스템
 - ☎ ARS 전화 : 142-211
- 납부방법 : 계좌 이체 및 신용카드
 - 음성 ARS : 신용카드 납부
 - 보이는 ARS :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납부
- 이용시간 : 07:00 ~ 23:30 납부 가능
 - ※ 본인인증 후 전자납부번호 또는 주민번호로 타인납부 가능
 - ※ 법인은 납부 불가

03 인터넷 이용 납부

(1) 위택스 (www.wetax.go.kr)

- 개요 : 인터넷으로 전국 지방세 신고 및 납부, 조회, 질의답변 등 정보검색 가능한 지방세 포털
 - ☎ 사용문의 안내 : 110
- 납부방법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 전자신고 납부 이용시간 : 00:30 ~ 23:30

⇨ 전자신고

: 취득세 / 등록면허세 / 지방소득세 / 주민세 / 지역자원시설세 / 레저세

⇨ 전자납부

- 지방세 : 전국 자치단체의 지방세 모든 세목의 정기분, 수시분, 신고분, 체납분을 금융기관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조회 납부
- 세외수입 : 지방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 전자신청

: 지방세 환급신청, 자동이체, 자동차세 연납신청 등 지방세 업무를 처리

(2) 인터넷지로납부 (www.giro.or.kr)

- 개 요 : 전국 지방세를 인터넷 지로사이트 이용 납부 가능
- 이용방법 : 사이트에 접속 → 로그인 → 지방세 선택 → 시군·구청 선택 → 주민등록번호 조회 → 납부
- 이용시간 : 00:30 ~ 23:30
- 납부방법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04 모바일 납부

(1) 스마트 위택스

- 개 요 :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의 모바일 버전으로, 전국 지방세를 납세자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조회·납부 할 수 있는 시스템
- 「스마트 위택스」 설치 방법
 - ① 스마트폰(각 통신사) 모바일 앱 스토어 검색란에 ‘지방세 납부’ 입력
 - ② 「스마트 위택스」 앱을 다운 받아 설치
 - ③ 회원가입(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필요)
 - ※ 필요시 위택스 홈페이지 ‘스마트위택스 공동인증서 이동서비스(smart.wetax.go.kr)’ 이용

(2) 금융앱

- 개 요 : 지방세고지서 모바일 전자송달 및 납부
- 참여기관 : 12개(금융결제원, 신한, 하나, 부산, 대구, 농협, 기업, 국민, 경남, 광주, 케이뱅크, 새마을금고)

(3) 간편결제

- 개 요 : 지방세고지서 모바일 전자송달 및 납부
- 참여기관 : 카카오톡, 네이버 앱, 페이코 앱

2. 지방세 납부매체

01 가상계좌 납부

- 개요 : 과세기관에서 납세자에게 발급한 가상계좌 번호를 확인하여 무통장 입금이나 인터넷뱅킹, CD/ATM기를 이용해서 계좌이체로 납부하는 방식
 - ※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번호 확인 (납세자별로 계좌번호 다름)
 - ※ 납세자와 입금자가 상이해도 입금처리됨
- 이용가능시간 : 00:30 ~ 22:00 (365일 가능)
- 대상은행 : 신한, 농협, 기업, 우리, 하나, 수협, 국민

02 은행 납부(인터넷은행 포함)

- 개요 : 시중은행 및 인터넷은행을 이용하여 본인에게 부과된 지방세를 납부
- 대상은행 : 시중은행, 인터넷은행(케이뱅크, 카카오뱅크)
- 처리내용 : 시중은행 창구나 CD/ATM기, 시중은행·인터넷은행 홈페이지·금융앱 등을 통해 지방세 납부

03 신용카드 납부

- 납부대상 : 신용카드 소지자
- 납부방법 : 위택스·인터넷지로 홈페이지, 은행 CD/ATM기

[지방세 · 세외수입을 앱카드로 납부하는 방법]

- ◆ 앱스토어에서 보유하고 있는 카드사의 앱카드 다운로드
- ◆ 위택스 지방세(PC, 스마트폰)에서 결제수단을 앱카드로 선택
- ◆ 앱카드 실행 후, 결제코드 또는 QR코드 선택입력
- ◆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결제버튼 클릭

04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 개요 : 납세자가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적립된 포인트 사용여부를 선택하고 사용한 포인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카드결제 되는 방식
- 이용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거나, 시·군·구 세무민원실에 방문하여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
- 처리방법 : 카드사별 카드포인트 정책에 의거 처리되며, 신용카드 잔여 포인트와 납부할 세액 비교 후 납부처리
- 이용가능시간 : 00:30 ~ 23:30 (365일 가능)

[처리 방법 : 신용카드 잔여 포인트와 납부할 세액 비교 후 납부처리]

구 분	납부 처리 방법	적용 사례
납부세액 > 잔여포인트	납부세액에서 신용카드 잔여 포인트를 차감한 후 남은 납부세액에 대해 카드결제 처리	납부세액 : 10,000원 (-)잔여포인트 : 5,000원 카드납부금액 : 5,000원
납부세액 < 잔여포인트	신용카드 잔여 포인트에서 납부세액 전액 차감	납부세액 : 10,000원 (-)잔여포인트 : 10,000원 카드납부금액 : 0원

- ※ 납부할 세액이 10,000원이고 잔여 포인트가 5,000Point인 경우, 부족액 5,000원은 신용카드로 자동결제
- ※ 조회포인트, 사용가능 카드, 차감액 및 차감시점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카드로 문의

05 자동이체 납부

- 개요 : 납세자가 본인에게 부과된 지방세를 지정된 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출금(결제) 날짜에 자동으로 납부하는 서비스
- 신청대상 : 시중은행(인터넷은행 포함) 계좌(출금통장) 소지자, 신용카드 소지자
- 신청방법 :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은행, 각 군·구청 세무과
- 신청세목 : 정기분 지방세(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

- ◆ 대상카드 : 12개카드사(BC, 삼성, 전북, 현대, 롯데, 신한, 제주, 하나, NH농협, KB국민, 광주, 수협)
- ※ 사용(용도)제한카드 : 기프트카드, 선불카드, 후불하이패스카드, 삼성체크카드, 가족카드 등

3. 지방세 납부세액 공제혜택

01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자 공제혜택

- 개요 : 자동차세는 자동차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을 매년 6월·12월에 납부,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공제

연세액 신고납부기간	계 산 식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연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2기분 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184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연납공제율 : 5%

- 신청방법 : 군·구 세무부서 전화·방문신청 또는 홈페이지(위택스)

02 자동차 및 전자고지 신청자 공제혜택

- 개요 : 정기분 지방세의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전자고지 및 자동차를 신청한 납세자에 한하여 고지서 1장당 아래와 같이 세액을 공제함

구분	공제액
○ 자동차 및 전자고지 중 어느 하나만 신청	800원
○ 자동차 및 전자고지 모두 신청	1,600원

- 신청방법 : 군·구 세무부서 방문신청 또는 홈페이지(위택스)

4. 디지털 지방세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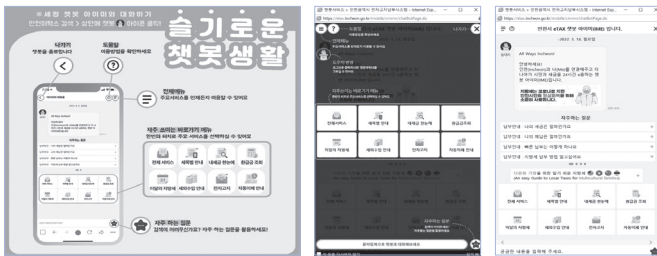
01 카카오톡 채널 “인천시 지방세”

- 개요: 지방세·세외수입 정보, 동영상, 사진 등 다양한 콘텐츠 제공 (납부방법, 법령개정 사항, 마을세무사 제도 등)
- 이용방법: 카카오톡 채널 “인천시 지방세” 검색 후 추가



02 지방세 챗봇 상담서비스 “아이미(IME)”

- 개요: 24시간 365일 비대면 인공지능(AI) 상담서비스 (지방세 안내 및 납부방법, 환급액 조회, 세외수입 등 정보)
※ 아이미(IME): 인천(Incheon)과 나(IME)를 연결해 주고 더 나아가 시민과 세금을 24시간 e음하는 챗봇
- 이용방법: 인터넷에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검색
→ “챗봇상담” 클릭 → 정보확인 및 상담



2025년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IV 지방세 구제제도 및 마을세무사 제도

1. 지방세 구제제도	59
2. 마을세무사 제도	63

2025년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1. 지방세 구제제도

01 지방세 구제제도의 의의

지방세 구제제도란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 등의 잘못을 가려 납세자가 억울한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납세자 보호제도입니다.

02 지방세 구제제도의 종류

구 분		심리·의결	결정
과세前	과세전 적부심사	지방세 심의위원회 (절차생략가능*)	시세 : 시장 군·구세 : 군수·구청장
과세後	이의신청	지방세 심의위원회 (절차생략가능*)	시세 : 시장 군·구세 : 군수·구청장
	심판청구 (조세심판원)	조세심판관 회의	조세심판관
	심사청구 (감사원)	감사위원회의	감사원
	행정소송	판사	판사

* 사유 : ① 각하결정사유 해당, ② 청구금액 1백만원 이하로서 유사 인용결정사례가 있는 경우 등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1 과세전적부심사(「지방세기본법」 제88조)

-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하여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 ※ 과세가 있기 전에 청구하는 것이므로 ‘과세전적부심사’ 라고 함

② 이의신청(「지방세기본법」 제90조)

-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및 증명서류에 불복의 사유를 적어 시세[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군·구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의 경우에는 시장에게, 군·구세[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군·구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 포함]의 경우에는 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

③ 심판청구(「지방세기본법」 제91조)

-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며,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이 있는 후 처분기간내에 처분 결과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

④ 감사원 심사청구(「감사원법」 제43조 등)

-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음.
- 이해관계인은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의 청구를 하여야 함.

⑤ 행정소송(「지방세기본법」 제98조)

- 과세관청의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 다만,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함.

-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다만,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이의신청 · 심판청구와 감사원 심사청구의 관계**(『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 ◆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와 감사원 심사청구를 중복 제기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감사원 심사청구를 취하지 아니하면 불복신청이 각하됨을 통지하여야 함. 다만, 감사원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기간 내에 제기된 불복청구를 처리함.

03 지방세 구제절차 흐름도




※ 지방세 행정심판 전치주의 제도입과 함께 시·도 심사청구 제도가 폐지되었고, 조세 심판원의 심판청구나 감사원 심사청구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행정소송을 할 수 있음

2. 마을세무사 제도

01 마을세무사란?

- 주민들의 생활 속 세금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재능 기부로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이웃 세무사

01 제도 안내

- **이용대상**
 -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
 - ※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등을 우선 상담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 재산보유자 등의 경우 상담이 제한될 수 있음
- **상담사항**
 - 국세와 지방세 세무상담
 -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상담(청구세액 3백만원 미만)
 - ※ 각종 신고서 작성 대행 및 신고 대행은 포함되지 않음
- **이용방법**
 - 120미추홀콜센터 또는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와 군·구 홈페이지를 이용 마을세무사 확인
 - 우선 전화, 팩스, 이메일을 통해 상담
 - 추가상담이 필요한 경우 마을세무사 사무실 방문 상담 가능
- **문의**  120 공공합의민안제나-
미추홀콜센터 ☎ (032) 120

03 인천광역시 마을세무사 명단

담당기관	담당지역(읍면동)	성명	전화번호
시본청	시청 민원실	정용은	032-859-0161
		손영철	032-858-0606
중구	신포동, 연안동, 신흥동, 개항동	이경원	032-713-9077
	도원동, 율목동, 동인천동, 영종동, 영종1동, 운서동, 용유동	조은혜	032-465-4207
동구	만석동, 화수1·화평동, 송림4동, 송림6동	박현영	032-465-4500
	화수2동, 송현1·2동, 송림4동, 송림6동	배호식	032-716-6290
	송현3동, 송림1동, 송림2동, 송림3·5동, 금창동	김창수	032-832-3060
미추홀구	송의1·3동, 송의2동, 송의4동, 용현5동	고재성	032-777-2777
	학익1동, 학익2동, 도화1동	유광수	032-223-7870
	용현2동, 용현3동, 용현1·4동	민상원	032-463-3120
	주안1동, 주안2동, 주안3동, 주안6동, 주안7동	유명석	032-864-9922
	주안1동, 주안2동, 주안3동, 주안6동, 주안7동	김소정	032-425-1729
	주안4동, 주안5동, 주안8동	김주택	032-423-4000
	관교동, 문학동, 도화2·3동	김태웅	032-882-0055
연수구	옥련1동, 옥련2동, 청학동	박문식	032-831-3471
	연수1동, 연수2동, 연수3동, 선학동	박기영	032-202-2990
	연수1동, 연수2동, 연수3동	이중희	032-466-6103
	동춘1동, 동춘2동, 동춘3동	이승록	032-816-1230
	동춘1동, 동춘2동, 동춘3동	이재동	032-715-7654
	송도1동, 송도2동, 송도3동, 송도4동, 송도5동	최종국	032-207-1771
	송도1동, 송도2동, 송도3동, 송도4동, 송도5동	이세웅	032-811-5755
	송도1동, 송도2동, 송도3동, 송도4동, 송도5동	이태훈	032-866-7389
	송도1동, 송도2동, 송도3동, 송도4동, 송도5동	고봉성	032-832-1909
	구월1동, 만수1동, 만수2동, 만수3동, 만수4동	설희근	032-429-9301
남동구	구월1동, 만수1동, 만수2동, 만수3동, 만수4동	이찬희	032-472-3344
	구월2동, 간석1동, 간석2동, 간석3동, 간석4동	이윤환	032-433-2015
	구월2동, 간석1동, 간석2동, 간석3동, 간석4동	홍주상	032-719-2117
	구월2동, 간석1동, 간석2동, 간석3동, 간석4동	이재환	032-721-7208
	구월3동, 남촌도림동	이병덕	070-4632-5881
	구월4동, 만수5동, 만수6동	오진수	032-422-1505
	서창2동, 논현1동, 논현2동	권혁만	032-464-3040
	장수서창동, 논현1동, 논현2동, 논현고잔동	김현택	032-427-3232
	장수서창동, 논현1동, 논현2동, 논현고잔동	최수현	032-818-2106

담당기관	담당지역	성명	전화번호
부평구	부평1동, 부평2동, 부평3동, 부평4동, 부평5동, 부평6동	홍광표	032-527-3184
	부평1동, 부평2동, 부평3동, 부평4동, 부평5동, 부평6동	박종렬	032-552-4955
	부평1동, 부평2동, 부평3동, 부평4동, 부평5동, 부평6동	정진영	032-710-1101
	산곡1동, 산곡2동, 산곡3동, 산곡4동, 십정1동, 십정2동	김신영	032-721-7207
	산곡1동, 산곡2동, 산곡3동, 산곡4동, 십정1동, 십정2동	박혜민	032-502-2613
	산곡1동, 산곡2동, 산곡3동, 산곡4동, 십정1동, 십정2동	주윤지	032-566-1204
	청천1동, 청천2동	이재관	032-202-7728
	갈산1동, 갈산2동, 삼산1동, 삼산2동	김도현	032-423-3399
	갈산1동, 갈산2동, 삼산1동, 삼산2동	고상용	032-546-3300
	부개1동, 부개2동, 부개3동, 일신동	한정수	032-529-9052
	계산1동, 계산2동, 계산3동, 계산4동	이명중	032-505-8300
	계산1동, 계산2동, 계산3동, 계산4동	임정완	032-551-3311
계양구	계산1동, 계산2동, 계산3동, 계산4동	박태현	02-6346-5160
	효성1동, 효성2동	김정현	032-549-0550
	효성1동, 효성2동	최호성	032-566-2203
	작전1동, 작전2동, 작전서운동	김현재	032-567-5575
	작전1동, 작전2동, 작전서운동	김천수	032-556-6699
	계양1동, 계양2동, 계양3동	권관중	032-710-3004
	계양1동, 계양2동, 계양3동	김길수	032-721-4993
	검암경서동	원현정	032-710-5800
서구	가좌1동, 가좌2동, 가좌3동, 가좌4동, 연희동	장건하	032-715-7331
	가좌1동, 가좌2동, 가좌3동, 가좌4동, 연희동	이흥현	032-569-0200
	청라1동, 청라2동, 청라3동	강명길	032-563-7692
	청라1동, 청라2동, 청라3동	박세봄	032-724-8698
	청라1동, 청라2동, 청라3동	김주현	032-713-9873
	가정1동, 가정2동, 가정3동	가순태	032-715-5678
	신현원창동, 석남1동, 석남2동, 석남3동	김한수	032-566-9338
	불로대곡동, 원당동, 마전동, 아라동, 당하동	임병호	032-565-3343
	불로대곡동, 원당동, 마전동, 아라동, 당하동	문병필	032-569-5335
	불로대곡동, 원당동, 마전동, 아라동, 당하동	신현찬	032-427-0114
	검단동, 오류왕길동	이대주	070-4047-7177
	강화군	강화읍, 내기면, 하점면, 양사면, 송해면, 교동면, 삼산면, 서도면	이재봉
강화읍, 선원면, 불은면, 길상면, 화도면, 양도면		이기흥	032-933-3941
옹진군	북도면, 연평면, 백령면, 대청면, 덕적면, 자월면, 영흥면	신원덕	032-471-3533
	북도면, 연평면, 백령면, 대청면, 덕적면, 자월면, 영흥면	남준일	032-887-6980

2025년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V 납세자보호관 제도 및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 1. 납세자보호관 제도 69
- 2.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78

2025년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1. 납세자보호관 제도



V 납세자보호관제도 및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립인 제도

자치단체	부서	납세자보호관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인천광역시	법무담당관	032) 440-2206	032) 440-8634
강화군	감사법무담당관	032) 930-3403	032) 930-3644
옹진군	기획감사실	032) 899-2074	032) 899-2039
중구	법무감사실	032) 760-7072	032) 760-6981
동구	기획감사실	032) 770-6932	032) 770-6059
미추홀구	감사실	032) 880-5971	032) 880-4859
연수구	감사실	032) 749-7132	032) 749-7049
남동구	감사실	032) 453-2161	032) 453-2079
부평구	기획조정실	032) 509-6096	032) 509-7604
계양구	기획예산실	032) 450-5053	032) 551-5713
서구	예산법무과	032) 560-4063	032) 560-2704

◆ 신청(접수)방법

-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 군·구에서 고지된 지방세관련 고충민원 등은 해당 군·구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납세자보호관(032-440-2206)에게 문의

01 개요

❖ 관련 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
- 「인천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 「인천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 각 군·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및 시행규칙
※ 각 군·구 홈페이지(자치법규) 참조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역할 및 권한

- (역할) 고충민원해소, 납세자 권리보호
- (권한) ①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②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및 중지요구
③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 교체 명령 요구 및 징계 요구
④ 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요구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 납세자권리현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된 사항 등

· 고충민원과 권리보호요청 ·

구분	고충민원	권리보호요청
내용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 진행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제출되는 민원

신청기간	부과제척기간 종료일 30일(군·구는 90일) 전까지	부과제척기간 종료일 30일(군·구는 90일) 전까지
처리기간	접수한 날로부터 7일(필요시 14일의 현장조사 및 7일의 추가 연장 가능)	접수한 날로부터 7일(필요시 14일의 현장조사 및 7일의 추가 연장 가능)

02 고충민원 신청

❖ 고충민원

-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

❖ 고충민원 제외 대상

-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 ※ 본안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은 대상에 포함
- 「지방세기본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 본안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은 대상에 포함
-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 「지방세기본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같은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 「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 고충민원의 처리 구분

인천광역시 납세자보호관	군·구 납세자보호관
① 시장이 결정·처분한 사안인 경우	① 군수·구청장이 결정·처분한 사안인 경우

② 내용이 유사한 시세 관련 고충민원이 시 관할 2개 이상 군·구에 접수되어 처리에 통일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군수·구청장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안인 경우
③ 군·구세 관련 군·구 고충민원 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재심청구)	③ 그 밖에 군수·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그 밖에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고충민원의 신청 및 처리기간

- 신청기간 : 지방세 부과와 제척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군·구는 90일 전까지)
- 처리기간 :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초일산입, 공휴일·토요일은 불산입)
 - ※ 필요한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내에 현장조사 등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음

❖ 신청(접수)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 군·구에서 고지된 지방세관련 고충민원 등은 해당 군·구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납세자보호관(032-440-2206)에게 문의

❖ 신청서식

- 고충민원신청서

03 권리보호요청

❖ 권리보호요청

-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및 체납처분 등 지방세 행정의 집행(예정)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에 권리보호를 요청

❖ 요청대상

-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공무원의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함.

1.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령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2. 지방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하는 행위
3.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과세기간·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 **일반 지방세 행정예징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처분 등 지방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함.

1. 소명자료 제출·고충민원·불복청구·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환급·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2.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령에 따른 경우 제외)
3.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 권리보호요청 기한 및 처리기간

- 신청기간: 지방세 부과·징수의 제척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군·구는 90일 전까지)
- 처리기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초일산입, 공휴일·토요일은 불산입)
 - ※ 필요한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내에 현장조사 등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음

❖ 신청(접수)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 군·구에서 발생한 세무조사 및 지방세 행정에 관한 권리보호요청 건은 해당 군·구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납세자보호관(032-440-2206)에게 문의

❖ 신청서식

- 권리보호요청 신청서

04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신청 및 결정

❖ 세무조사 기간 연장

- 세무조사 담당 세무부서장의 신청
 - 신청기한: 조사기간 종료 3일(공휴일·토요일을 제외)전까지 신청
 - 연장기간: 20일 이내
 - 연장사유: 「지방세기본법」 제84조제1항 각 호의 사유

1. 납세자가 장부등의 은닉, 제출지연, 제출거부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 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지방세 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범칙사건조사로 조사 유형이 전환 되는 경우
4. 천재지변,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
6.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 대상자의 세금 탈루혐의의 해명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세무조사의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는 조사기간 연장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신청
 - 신청기한: 조사기간 종료 3일(공휴일·토요일을 제외)전까지 신청

- 연장기간 : 20일 이내
 - ※ 다만, 지방세 범칙사건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 포함)는 조사기간 연장 신청 대상에서 제외

❖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

- 결정기한 :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공휴일·토요일은 제외)
- 결정내용 : 인정여부에 따라 “승인” 또는 “불승인” 처리

❖ 신청(접수)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 군·구에서 발생한 세무조사에 관한 기간연장 신청은 해당 군·구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납세자보호관(032-440-2206)에게 문의

❖ 신청서식

-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

05 세무조사 연기 신청 및 결정

❖ 세무조사 연기

- 납세자의 신청
 - 신청기한 : 조사개시 3일(공휴일·토요일을 제외)전까지 신청
 - 연기사유 : 「지방세기본법」 제83조 제2항에 따른 천재지변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각 호의 사유

1. 화재 및 도난,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중상해,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등이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

- 결정기한 :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공휴일·토요일은 제외)

- 결정내용 : 인정여부에 따라 “승인” 또는 “불승인” 처리
 - ※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 연기 승인을 하는 경우, 신청인이 요구한 기간을 단축하여 승인 가능

❖ 신청(접수)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 군·구에서 고지된 지방세관련 고충민원 등은 해당 군·구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납세자보호관(032-440-2206)에게 문의

❖ 신청서식

-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서

06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 업무범위

-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납세자의 기한 연장에 대한 처리
- 「지방세기본법」 제57조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신청에 대한 처리
-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납세자의 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

❖ 기한 연장

- 기한의 연장신청 및 결정
 -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군·구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의견 및 사실 확인 결과 등을 검토하여 기한연장 신청 이유에 대한 인정여부에 따라 “승인” 또는 “불승인” 처리
- 신청(접수)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군·구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 신청서식

- 신고·신청·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통지의 기한연장 신청: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서
- 납부의 기한연장 신청: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 가산세 감면신청

- 가산세 감면신청 및 결정

- 「지방세기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군·구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의견 및 사실 확인 결과 등을 검토하여 기한연장 신청 이유에 대한 인정여부에 따라 “승인” 또는 “불승인” 처리

- 신청(접수)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군·구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 신청서식

- 지방세 가산세 감면 등 신청서

❖ 징수유예 등의 신청

- 징수유예 등 신청 및 결정

- 「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징수유예를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군·구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군·구 납세자보호관(시로 이관된 시세 체납의 경우 시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의견 및 사실 확인 결과와 납세담보의 제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기한연장 신청 이유에 대한 인정여부에 따라 “승인” 또는 “불승인” 처리

- 신청(접수)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 군·구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 신청서식

- (징수유예등, 체납처분유예)신청서

2.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01 개요

❖ 도입 배경

- 국세의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등의 불복청구 시 영세 납세자가 대리인을 통해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 제도를 2014. 3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나, 그간 지방세는 무료대리인 제도가 없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조세운영 체계상 형평성 결여
- 이에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2020.3.2부터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시행
- 관련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
「인천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33조 및 제34조

❖ 주요 내용

-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지방세 불복청구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보유재산 5억원 이하인 개인 및 매출액 3억원 이하, 자산가액 5억원 이하인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로서, 다만 고액·상습 체납자이거나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의 경우 신청이 제외되며,
- 신청절차는 불복청구인이 불복업무 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대상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 다음 인천광역시장이 미리 위촉한 대리인 중에서 대리인 선정을 하여 신청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하고, 이때 군·구 세무부서에 신청한 경우에는 시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 대리인으로 하여금 불복업무를 대리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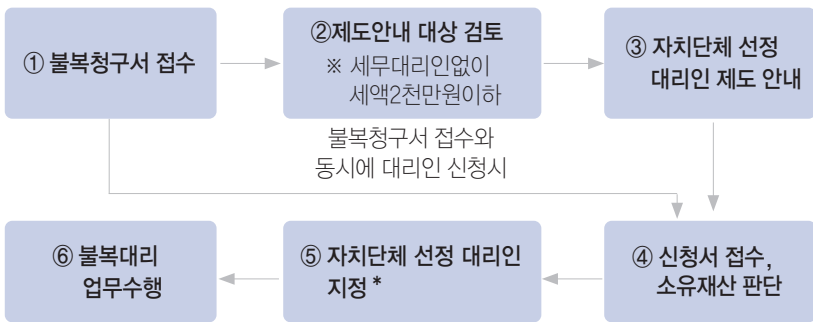
02 선정 대리인 제도

❖ 선정 대리인 신청 요건

- 영세납세자의 불복업무(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를 무료로 대리

구 분	내 용	
신청요건	청구·신청세액	• 2천만원 이하
	소득금액 및 재산가액	• 개인)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보유재산* 5억원 이하 • 법인) 매출액 3억원 이하 & 자산가액 5억원 이하 * 부동산, 승용차, 회원권
	신청불가 세목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 3천만원이상&시행령요건 **1천만원이상&1년이상
신청 및 지정절차	청구·신청인	• 신청요건을 갖추어 신청서 제출
	자치단체	• 요건충족여부 검토 → 대리인 선정 → 신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통지
대리인 위촉·관리	시장	• 대리인 통합 위촉·관리, 시, 군·구 대리인 지정
	군수·구청장	• 시장에게 대리인 지정 요청

❖ 선정 대리인 업무처리 절차



*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정·통지

03 국선대리인과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비교

• 국선대리인과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주요내용 비교 •

구 분	국선대리인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위촉대상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신청대상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심판청구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이의신청인
신청세액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	청구세액 2천만원 이하
적용요건	개인)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보유재산 5억원 이하 법인) 수입금액(매출액) 3억원 이하 & 자산가액 5억원 이하	
	보유재산 범위	부동산, 승용차, 골프·콘도회원권, 전세금, 주식·출자지분
적용제외 세목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담배·지방소비세, 레저세

Ⅵ 기타 유용한 지방세 정보

1.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제도	83
2.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제도	86
3. 분할납부 및 물납 제도	88
4. 지방세 체납시 제재 내용	90
5. 납세증명서의 제출	91

2025년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1.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제도

지방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 이의 잘못이나 누락 등이 있을 때 이를 수정할 수 있도록 '수정신고', '경정청구' 등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 기한이 지났더라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 후 신고'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01 수정신고 제도(「지방세기본법」 제49조)

□ 의의

-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기한후신고서(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과세관청이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부과제척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를 '수정 신고'라 함.

□ 요건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수정신고를 할 수 있음.
 - ①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
 - ②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 ③ 그 밖에 특별징수의무자의 정산과정에서 누락 등이 발생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 등보다 적을 때

□ 효과

- 적법·유효한 수정신고가 있으면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지며,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한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당초 세액과 증액된 세액은 조세쟁송, 체납 처분 등의 별개의 대상임).

02 경정청구 제도(「지방세기본법」 제50조)

□ 의의

-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까지 제출한 자 및 기한후신고서(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과세관청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경정청구’라 함.

□ 요건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 ①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 ②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 효과

-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한 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결정·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함.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 신청,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03 기한 후 신고 제도(「지방세기본법」 제51조)

□ 의의 및 요건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과세관청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납기 후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를 '기한 후 신고'라 함.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 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 효과

- 기한 후 신고가 있다 하더라도 곧바로 기한 후 신고 한 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납부한 경우만 해당) 과세관청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비로소 그 때 세액이 확정됨.

• 수정신고 · 경정청구 및 기한 후 신고 비교 •

구분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효력	확정력 있음 (결정·경정 없음)	확정력 없음 (결정·경정 있음)	확정력 없음 (결정·경정 있음)
통지의무	없음	2개월 이내	3개월 이내
가산세의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월이내: 90% • 1개월초과~3개월이내: 75% • 3개월초과~6개월이내: 50% • 6개월초과~1년이내: 30% • 1년초과~1년6개월이내: 20% • 1년6개월초과~2년이내: 10% ※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월이내 : 50% • 1개월초과~3개월이내 : 30% • 3개월초과~6개월이내 : 20% ※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	

2.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제도

01 기한연장

□ 관련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요건

-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의 사유*로 납세자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통지나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의 사유

1. 납세자가 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납세자나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모 또는 도산 등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로 한정)
5.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6.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신고 또는 납부가 곤란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7.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해당 납세자의 장부(장부 작성에 필요한 자료 포함)를 도난당한 경우(지방소득세에 관하여 신고·신청·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통지를 하거나 납부하는 경우로 한정)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02 징수유예

□ 관련법령

- 「지방세징수법」 제25조,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요건

- 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가 풍수해 등*의 사유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 :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풍수해 등*의 사유로 고지된 지방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징수유예 사유

1. 풍수해, 비박, 화재, 전쟁, 그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重傷害)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5.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기한연장과 징수유예의 차이 •

구 분	기 한 연 장	징 수 유 예
기 간	6월(요건지속시 6월 연장가능)	6월(요건지속시 6월 연장가능)
대 상	신고납부하는 세금에 적용 - 신고납부기한전 : 가능 - 신고납부기한경과후 : 불가능	부과고지하는 세금에 적용 - 납기전 : 고지유예, 분할고지 - 고지후 : 징수유예
효 과	가산세 배제	납부지연가산세 배제
담보제도	있음(사망, 질병, 재해, 정보처리장치 불능인 경우는 제외)	

※ 신고납부세목도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다시 부과·고지하는 세금에 해당되어 가산세를 가산한 세금에 대하여 징수유예가 가능

3. 분할납부 및 물납 제도

01 분할납부 제도

□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93조제7항, 제95조제4항, 제103조의23제4항, 제103조의37제5항, 제118조 및 제147조제2항

□ 분할납부 대상 세목 및 금액

구 분	지방소득세	재산세
분할납부 대상	납부세액 100만원 초과	납부세액 250만원 초과
분할납부 세액	납부세액 200만원 이하 : 100만원 초과 금액 납부세액 200만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 금액	납부세액 500만원 이하 : 250만원 초과 금액 납부세액 500만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 금액
비고	개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 개인(양도소득분) 및 특별징수분 제외	소방분 지역지원시설세 분할납부는 재산세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만 준용하여 적용

□ 분할납부 신청 및 기한

- 해당 군수·구청장에게 신청(신고)하여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3개월 이내 분할납부

□ 분할납부 효과

- 분할납부 기간 중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음

02 물납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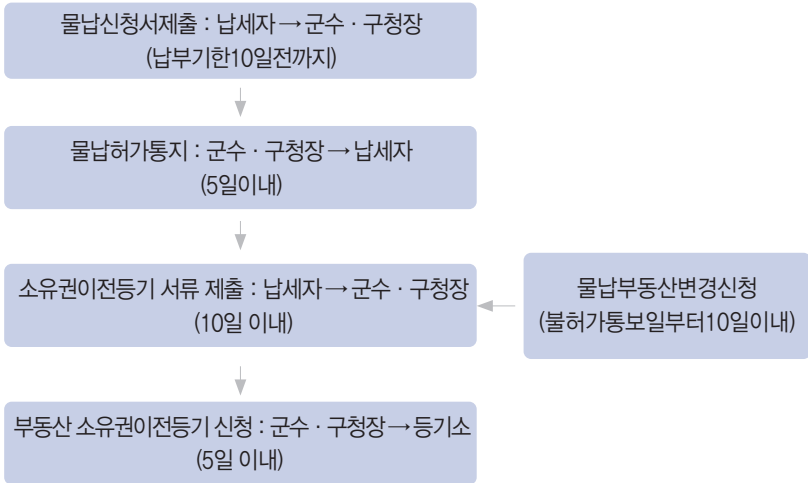
□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

□ 물납 대상 세목 및 금액

- 대상세목 : 재산세
- 대상금액 :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대상물건 : 군·구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에 한함

□ 물납 체계도



□ 물납 부동산의 평가방법

- 부동산 가액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함
 - 토지 및 주택 : 공시가격
 - 건축물 : 시가표준액
-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전 6개월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의 기간 중에 확정된 가액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시가로 봄
 -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수용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 : 그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
 -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으로서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있는 경우 : 그 취득가격

4. 지방세 체납시 제재 내용

지방세가 납부기한 이내에 완납되지 않고 체납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재가 뒤따를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 지방세 체납시 제재의 종류 •

연번	제재의 내용	법적 근거
1	납부독촉(최고)	「지방세징수법」 제32조
2	납부지연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3	체납처분	「지방세징수법」 제33조 ~ 제107조
4	관허사업의 제한	「지방세징수법」 제7조
5	출국금지	「지방세징수법」 제8조
6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지방세징수법」 제9조
7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지방세징수법」 제11조
8	고액·상습체납자 감치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
9	[자동차세 체납에 한함]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자동차등록증 발급 거부	「지방세법」 제131조

5. 납세증명서의 제출

납세자는 지방세징수법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방세의 체납이 없다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 념

-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임

1.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25조의2·제26조 또는 제105조에 따른 유예액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
3.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가 「지방세법」 제119조의2에 따라 그 신탁재산으로써 위탁자의 재산세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그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재산세등
4. 「지방세징수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양도담보권자가 「지방세기본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양도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그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5. 「지방세징수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중 재산의 명의수탁자가 「지방세기본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중중이 명의신탁한 재산으로써 중중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그 명의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 제출사유(「지방세징수법」 제5조)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 허가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할 때

□ 유효기간

-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0일간임. 다만, 발급일 현재 해당 신청인에게 고지된 지방세가 있거나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법정 납부기한의 말일이 도래하는 지방세(신고납부하거나 특별징수하여 납부하는 지방세는 제외)가 있을 때에는 그 유효기간을 납부기한까지로 할 수 있음

2025년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VII 부록

- 1. 2025년 지방세 관계법 주요 개정내용 95
- 2. 국세 전화상담 및 세무서 안내 100

2025년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1. 2025년 지방세 관계법 주요 개정내용

❖ 지방세기본법

제목	주요 내용
①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의 특례 신설(§ 28⑤)	○ 구속된 사람 등에 대한 송달장소를 규정한 민사소송법을 반영하여, 구속자 등에 대해서는 교정시설*·유치장의 관서장에게 송달할 수 있는 특례 신설 *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②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 보완(§ 40①4)	○ 압류한 재산이 압류금지 재산 등에 해당하여 종전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 압류금지 재산 등에 대한 압류를 사유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도록 규정 명확화
③ 이의신청 대리인 선임기준 완화(§ 93②)	○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 가능한 이의신청 대상금액을 국세기본법령과 동일(2천만원)하게 규정
④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 대상 확대(§ 93의2)	○ 영세 납세자(개인·법인)의 권리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청구·신청 기준금액 상향(1천만원→2천만원)하고, 지자체 선정 대리인의 신청요건* 확대 * 개인) 배우자 재산·소득 합산 제외 법인) 영세법인 허용(매출액 3억원 이하, 자산가액 5억원 이하)
⑤ 지방세 운영에 대한 포상금 등 지원 근거 마련(§ 150③)	○ 지방세제 합리화 및 자주재원 확충 강화 등 정책에 적극 기여하고 자치단체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세의 부과·징수 등에 공적이 있는 자치단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신설
⑥ 납세자보호관의 납세보호 업무 추가(영 § 51의2)	○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범위에 선정 대리인 운영업무를 추가

❖ 지방세징수법

제목	주요 내용
① 취득자격이 없는 자의 압류재산 매수 제한(§ 77)	○ 압류재산 매수인의 제한범위에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 취득세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를 포함
② 공매 매각결정 기일 변경 근거 신설(§ 92)	○ 낙찰자가 매수인이 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할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매각 결정 기일을 연기(1회에 한장)할 수 있는 근거 마련
③ 체납처분 중지 절차 완화(§ 104)	○ 체납처분 중지 사유에 해당하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후 체납처분을 중지하도록 하고 1개월간 공고 절차는 생략하도록 개정
④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서 서식 개선(규칙 § 2, 별지 제1호)	○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서식의 본문 내용이 근거 법령을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 물적납세의무 내역을 작성할 수 있도록 서식(표) 추가

❖ 지방세법

제목	주요 내용
① 차량 상속 취득세 비과세 인정기한 기한 연장 (§ 97)	○ 차량 취득세 비과세 사유 중 차령초과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의 말소등록 기한을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과 일치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② 유사부동산 시가인정액 확장 평가기간 마련 (영 § 14조5⑥)	○ 유사부동산의 경우에도 평가기간 내 시가인정액이 없을 경우 확장*된 평가기간내의 가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 * 취득일 전 2년 ~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내의 매매거래가액 등을 사용

제목	주요 내용
<p>③ 다주택자 등 종과배제 및 주택 수 제외 확대 (영 § 28조의2·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선축매입임대 공급을 위해 멸실 목적으로 노후주택 취득 시, 기본세율 적용 대상* 확대 * 주택 철거 후 '주거용 오피스텔' 건설 시에도 취득세 종과배제(매입약정제결 증빙)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 목적으로 멸실을 위한 주택 구입 시 기본세율 적용 요건* 완화 * 1년 내 멸실 + 3년 내 신축 + 5년 내 매각 ○ 신축 소형주택* 구입, 기축 소형주택 매입·임대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27.12월까지 연장' * 전용면적 60㎡이하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취득가액) 이하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 「주택법」상 의무 등 위반에 따라 내들이 매입 후 재공급하기 위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기본세율 적용 ○ 기존 소유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범위에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자' 가 신축하여 보유하는 주택 추가
<p>④ 정비사업의 토지분 취득세 과세표준 경과조치(부칙) 마련 (대통령령 제33325호, 2023.3.14., 제3조의2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비사업조합*이 취득하는 비조합원용 부동산 또는 체비지·보류지 및 재건축조합원의 토지 지분 증가분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시, ○ 해당 개정령 시행('23.3.14.)前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은' 분양가액 '과' 공시지가'로 계산한 과세표준 중 적은가액으로 적용 * 재건축·재개발·도시개발사업조합·소규모주택정비사업조합·주택조합
<p>⑤ 주택 수 산정방법 및 기준일 보완(영 § 28조의3·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양권'의 1세대 판단 시점을 '분양권으로 인한 주택 취득 시기(주택 취득일 현재)로 명확화 ○ 동일 분양권을 세대 내 증여하는 경우나 타인에게 매매, 교환, 증여한 후 해당 분양권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의 주택 수 판단은, '가장 빠른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권의 최초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개선

제목	주요 내용
⑥ 법인등기 제도 개정에 따른 등록면허세 개선(영 § 43)	○ 법인 등기제도에 대해 지점 등기부 폐지, 본점 이전등기 간소화를 내용으로 하는 「상법」등 관계법 개정에 따라, 지점등기부 관련 등록면허세 규정 삭제 및 본점 이전등기 간소화에 따른 등록면허세 규정 개선
⑦ 폐업신고 관련 면허분 등록 면허세 비과세 요건 완화(영 § 40)	○ 매년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 중인 해당 업종의 등록면허세 면허분 비과세 적용 범위 합리화
⑧ 중소기업 고용지원을 위한 주민세 종업원분 과표공제 확대(§ 84의5)	○ '1년 동안 50명 급여액 공제의 적용요건 명확화 ○ 사업소 신설 1년 이내인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토록 요건을 확대
⑨ 어린이집 경영자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비과세(영 § 79②)	○ 주민세 사업소분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개인사업자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경영자를 추가
⑩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 기준 상향(영 § 85의2②)	○ 종업원분 면세점 기준 상향(300만원 → 360만원) * 면세점 : 개정전 300만원 × 5 = 1.5억원 개정후 360만원 × 5 = 1.8억원
⑪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법률 제19230호 § 102의 2~8 등)	○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국세 개정과 연계하여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폐지
⑫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률 제17769호 부칙 § 1 등)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제도 정비 등을 고려하여 국세 개정에 맞춰 가상자산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시행 2년 유예('25년 → '27년)
⑬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율 조정(§ 103의20)	○ 성실신고대상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의 세부담 적정화를 위한 국세개정에 맞춰 법인지방소득세 최저세율 상향(0.9% → 1.9%, 국세의 10% 수준)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4~3단계) * ①~③ 요건 모두 충족 ① 지배주주 등 지분율 50% 초과 & ②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부동산 임대·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 ③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⑭ 자동차세 연납공제를 조정(영 § 125)	○ '25년 이후부터 3% 연납 공제를 적용 계획을 폐지하고, 5%로 유지
⑮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적용기한 연장(법률 제 10221호 부칙 § 1의2)	○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과세 일몰기한을 2년 연장('24년 → '26년)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목	주요 내용
① 위탁운영 직장어린이집 등 감면 확대 및 연장 (§ 19①②)	○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감면의 대상을 당초 설치의무대상 위탁 운영 직장어린이집에서 모든 위탁운영 직장어린이집으로 확대
② 다자녀 양육 자동차 기준 완화 및 감면 확대 (§ 22의2, 영 § 10의2)	○ 범정부 차원의 다자녀 기준 완화(3→2자녀)에 맞춰, 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양육목적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을 확대 * 2자녀 양육자 차량 취득시 취득세 50% 감면 신설(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70만원 한)
③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재산세 감면 신설 (§ 31⑧)	○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감면 신설 * 수분양자가 집값의 일부(10~25%)만 내고 입주한 뒤, 공공주택 사업자와 20~30년 동안 소유권을 공유하면서 소유지분을 적립하여 취득하는 주택
④ 신축 소형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 33의2)	○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non아파트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매각·임대 목적의 소형주택 공급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도시형 생활주택·다가구주택, '24.1.10.~'25.12.31. 준공, 전용면적 60㎡ 이하, 원시취득 한
⑤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신설 (§ 33의3)	○ 지방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 물량 해소 및 임대활용을 통한 전·월세 시장 안정 지원을 위해 지방 미분양아파트 임대공급 시 취득세 감면 신설 * '24.1.10.~'25.12.31. 준공,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3억원 이하, '25.12.31.까지 임대계약 체결, 2년 이상 임대
⑥ 연안항로 취항용 여객선박 감면 신설 등 (§ 64②③)	○ he 대중교통수단과의 형평성 및 침체된 연안 여객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연안항로에 취항하는 여객운송용선박에 대해 감면 신설
⑦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 (§ 75의5③④)	○ 무주택·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취득가액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신설

2. 국제 전화상담 및 세무서 안내

❖ 국제상담센터 126 상담전화 이용안내

- 국제관련 모든 상담은 국번없이 126(일반통화요금 적용)
- 업무시간 : 평일9시 ~ 18시(탈세제보는 24시간 상담)
- * 해외에서 '126' 상담전화 이용하는 방법 : 해당지역 국제전화 사업자코드 → 대한민국 국가번호 → 126 (예) 미국에서 전화하는 경우 : 미국 국제전화 사업자 코드 → 82 → 126

❖ 인천광역시 관할 세무서 전화번호 안내

구분	관할	전화번호	주소
인천지방국세청		032-718-6200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763 (구월동)
인 천 세 무 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옹진군	032-770-0200	인천시 동구 우각로 75 (창영동)
연 수 세 무 서	연수구	032-670-9200	인천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송도동)
남 동 세 무 서	남동구	032-460-5200	인천시 남동구 인화로 548 (구월동)
부 평 세 무 서	부평구	032-540-6200	인천시 부평구 부평대로 147 (부평동)
계 양 세 무 서	계양구	032-459-8200	인천시 계양구 효서로 244 (작전동)
서 인 천 세 무 서	서구	032-560-5200	인천시 서구 청라사파이어로 192 (청라동)
김 포 세 무 서	강화군, 경기도 김포시	031-980-3200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강화민원봉사실)





2025년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발행일 : 2025년 3월

발행처 : 인천광역시 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연락처 : 전화) 032-440-2540
FAX) 032-440-8702

참여자 : 재 정 기 획 관 성하영
세 정 책 담 당 관 김기원
세 정 담 당 김영구
주 무 관 오기우
세목별팀장 및 업무담당자

※ 본 책자는 안내·참고용으로 법적책임은 없습니다.

- ◆ 본 책자는 인천광역시 세정담당관실에서 지방세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법적책임은 없습니다.
- ◆ 구체적인 과세문제에 있어서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필요한 바, 과세관청 및 세무전문가와 상담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